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I . 2025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4.10.31)를 통하여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4년도 대비 2조 3,002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되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도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①저출생 대응, ②건강도시 서울, ③활력있는 경제, ④춤춤 돌봄, ⑤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⑥글로벌 매력 도시, ⑦균형 발전 등 7개 핵심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도함
- 서울시의 '25년도 예산안은 48조 407억원으로 중복계상 되는 회계간 전·출입(4조 4,22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3조 6,183억원이며
 - 순계예산중 자치구 지원(6조 7,080억원), 교육청 지원(3조 8,351억원), 채무상환(1조 5,514억원), 기금전출금(3,206억원), 반환금(4,717억원)을 제외한 실질행규모는 30조 7,314억원임
 - 분야별 집행규모중 ①사회복지분야는 '24년도 본예산(16조 3,531억원)보다 6.7%(1조 965억원) 증가한 17조 4,495억원, ②공원환경 분야는 '24년도 본예산(2조 2,089억원)보다 7.5%, 1,648억원 증가한 2조 3,736억원을 편성하고, ③도로·교통분야는 '24년도 본예산(2조 2,985억원)보다 △8.0%(△1,842억원) 감소한 2조 1,142억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④도시안전 분야는 '24년도 본예산(1조 7,301억원)보다 2.2%, 375억원 증가한 1조 7,676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5년도 예산안은 48조 406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7조 3,608억 7,700만원)과 비교할 경우에는 1.4%, 6,798억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24년도 본예산(45조 7,405억원)과 비교하면 5.0% 2조 3,001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4,142억 4,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운용계획(5조 2,946억 600만원) 보다 △16.6%, △8,803억 6,100만원 감액계획한 것이나, 금년도 본예산 당시 운용계획(4조 7,839억 4,200만원)보다는 △7.7%, △3,696억 9,600만원 감액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1-1〉 2025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	산	48,040,683	47,360,877	679,805	1.4
	일반회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특별회계	13,656,800	13,144,034	512,766	3.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p.13

구	분	2025년도 (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률
기	금	4,414,245	4,783,942	△369,696	△7.7
(20개 기금 28계정)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98)

3. 예산안 개요

(1)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조 406억 8,3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34조 3,838억 8,200만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3조 6,568억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2〉 2025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계		48,040,683	47,360,877	679,805	1.4
일	반 회 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특	별 회 계	13,656,800	13,144,034	512,766	3.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40,112	1,913,845	26,266	1.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30,000	970,000	60,000	6.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10,112	943,845	△33,733	△3.6
	기 타 특 별 회 계	11,716,688	11,230,188	486,500	4.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20,620	2,127,178	△306,557	△14.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640,507	1,731,004	△90,497	△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7,560	224,692	△147,132	△65.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77,636	2,418,702	658,934	27.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975,637	1,694,889	280,748	16.6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49,823	176,620	73,203	41.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485	9,594	1,891	19.7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822,188	1,789,628	32,559	1.8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9,680	31,871	△2,190	△6.9
	소 방 특 별 회 계	1,011,548	1,026,006	△14,458	△1.4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조 3,838억 8,2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34조 2,168억 4,300만원)보다 0.5%, 1,670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4조 9,125억 2,8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24조 2,352억 7,400만원)보다 2.8%, 6,772억 5,4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1조 4,841억 1,1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1조 4,714억 9,300만원)보다 0.9%, 126억 1,700만원 증액 편성요청 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4년도 최종예산(1,433억 6,800만원)보다 △39.4%, △565억 5,600만원이 감액된 868억 1,1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하였고, **보조금**은 7조 4,404억 3,7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7조 792억 6,800만원)보다 5.1%, 3,611억 6,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지방채**는 '24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을 위해 1,50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년도 최종예산(1조 2,874억 3,800만원)보다 △75.9%, △9,774억 4,400만원 감액된 3,099억 9,3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3〉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지방세수입	24,912,528	24,235,274	677,254	2.8
세외수입	1,484,111	1,471,493	12,617	0.9
지방교부세	86,811	143,368	△56,556	△39.4
보조금	7,440,437	7,079,268	361,169	5.1
지방채	150,000	-	-	순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9,993	1,287,438	△977,444	△75.9

2) 특별회계

-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4년도 최종예산(13조 1,440억 3,400만원)보다 3.9%, 5,127억 6,600만원 증액된 13조 6,56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세외수입**은 3조 7,523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4년도 최종예산(3조 1,413억 7,800만원)보다 19.4%, 6,109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국고보조금등**은 1조 8,878억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1조 6,941억 1,600만원)보다 11.4%, 1,936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며
-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9,434억 5,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4,33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4,124억원)에서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24년도 최종예산(1조 6,907억 6,500만원)보다 5.8%, 980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한 1조 7,888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부세**는 69억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86억 4,000만원)보다 △20.1%, △17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조 2,209억 4,0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6조 6,091억 3,200만원)보다 △5.9%, △3,881억 9,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4〉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656,800	13,144,034	512,766		3.9
	세 외 수 입	3,752,301	3,141,378	610,922		19.4
	국 고 보 조 금 등	1,887,800	1,694,116	193,683		11.4
	지 방 채	1,788,858	1,690,765	98,092		5.8
	지 방 교 부 세	6,900	8,640	△1,740		△2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20,940	6,609,132	△388,192		△5.9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8조 406억 8,3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4년도 최종예산 대비 0.5%, 1,670억 3,900만원 증액된 34조 3,838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4년도 최종예산 대비 3.9%, 5,127억 6,600만원 증액된 13조 6,568억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4조 4,222억 9,482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조 3,800억 9,308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22억 174만원 전출되며

○ 법정 의무경비는 12조 8,869억 166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자치구 지원은 6조 7,080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6,619억 6,773만원과 특별회계 460억 4,698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8,350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8,312억 7,991만원과 특별회계 37억 7,836만원,
- 채무상환 1조 5,513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 621만원과 특별회계 1조 5,322억 8,809만원,
- 반환금 등 4,717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23억 1,099만원과 특별회계 794억 3,406만원,
- 기금전출금 3,206억 8,93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편성한 것임

○ 총계예산중 회계간 전·출입과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30조 7,31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조 7,784억 3,500만원, 특별회계 11조 9,530억 5,100만원임

〈표 1-5〉 2025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규 모	48,040,683	47,360,877	679,805	1.4
일 반 회 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특 별 회 계	13,656,800	13,144,034	512,766	3.9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회 계 간 전 출·입 :	4조 4,222억 9,482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4조 3,800억 9,308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22억 174만원	

순 계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순 계 규 모	43,618,388	42,753,994	864,393	2.0
일 반 회 계	30,003,789	29,653,810	349,978	1.2
특 별 회 계	13,614,599	13,100,183	514,415	3.9

법 의 경 차 정 무 비 감	법 정 의 무 경 비 :	12조 8,869억 166만원	
	일 반 회 계	11조 2,253억 5,419만원	특 별 회 계 1조 6,615억 4,748만원
	- 자치구 지원	6조 6,619억 6,773만원	- 자 치 구 지 원 460억 4,698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8,312억 7,991만원	- 교 육 청 지 원 37억 7,836만원
	- 채 무 상 환	191억 621만원	- 채 무 상 환 1조 5,322억 8,809만원
	- 기금전출금	3,206억 8,935만원	- 기 금 전 출 금 - -
	- 반 환 금 등	3,923억 1,099만원	- 반 환 금 등 794억 3,406만원

실 집 행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실 집 행 규 모	30,731,486	30,109,940	621,545	2.1
일 반 회 계	18,778,435	18,011,918	766,516	4.3
특 별 회 계	11,953,051	12,098,022	△144,970	△1.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재구성

2) 예산안 자원 배분(부문별·성질별)

- '2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8조 406억 8,3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
영경비(2조 2,132억원), 재무활동(8조 2,476억원), 교육청(3조 8,350
억원) 및 자치구 지원(6조 7,080억원) 경비를 차감한 **사업비 편성규모**는
27조 367억 5,000만원으로 '24년도 최종예산(26조 8,627억 5,300
만원) 대비 0.6%, 1,739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편성규모**는 사회복지 17조 4,495억 7,000만원(36.3%),
공원·환경 2조 3,736억 5,100만원(4.9%), 도로·교통 2조 1,142억
8,800만원(4.4%), 도시안전 1조 7,676억 300만원(3.7%), 문화관광
9,546억 200만원(2.0%), 일반행정 9,733억 2,800만원(2.0%), 산업
경제 7,980억 4,400만원(1.7%) 등으로 확인됨

〈표 1-6〉 2025년도 부문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8,040,683	100.0	47,360,877	100.0	679,805		1.4
행	정 운 영 경 비	2,213,252	4.6	2,176,739	4.6	36,513		1.7
재	무 활 동	8,247,606	17.2	7,760,362	16.4	487,244		6.3
교	육 청 지 원	3,835,058	8.0	3,930,588	8.3	△95,530		△2.4
자	치 구 지 원	6,708,014	14.0	6,630,432	14.0	77,581		1.2
사	업 비	27,036,750	56.3	26,862,753	56.7	173,997		0.6
	사 회 복 지	17,449,570	36.3	16,537,065	34.9	912,505		5.5
	공 원 · 환 경	2,373,651	4.9	2,481,821	5.2	△108,170		△4.4
	도 로 · 교 통	2,114,288	4.4	2,516,102	5.3	△401,814		△16.0
	도 시 안 전	1,767,603	3.7	1,898,143	4.0	△130,539		△6.9
	문 화 관 광	954,602	2.0	963,672	2.0	△9,070		△0.9
	일 반 행 정	973,328	2.0	1,033,661	2.2	△60,332		△5.8
	산 업 경 제	798,044	1.7	895,024	1.9	△96,980		△10.8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책	458,741	1.0	401,159	0.8	57,581		14.4
	예 비 비	146,921	0.3	136,102	0.3	10,818		7.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재구성

〈표 1-7〉 2025년도 성질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8,040,683	100.0	47,360,877	100.0	679,805		1.4
	인 건 비	1,813,025	3.8	1,770,996	3.8	42,028		2.4
	물 건 비	1,612,720	3.4	1,564,005	3.3	48,715		3.1
	경 상 이 전	26,264,495	54.7	26,000,008	54.9	264,487		1.0
	자 본 지 출	5,712,783	11.9	5,798,302	12.2	△85,518		△1.5
	용자 및 출자	479,762	1.0	485,419	1.0	△5,657		△1.2
	보 전 재 원	1,415,514	3.0	800,314	1.7	615,200		76.9
	내 부 거 래	10,439,467	21.7	10,654,175	22.5	△214,708		△2.0
	예비비 및 기타	302,914	0.6	287,655	0.6	15,259		5.3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21~22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0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5년도에 운용할 20개 기금(28개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조 4,142억 4,500만원으로 '24년도(4조 7,839억 4,200만원)보다 △7.7%, △3,696억 9,600만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25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안)	2024년도 ^{주1)}	증감	증감률
20개 기금 (28개 계정)	4,414,245	4,783,942	△369,696	△7.7

주1)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25년도 본예산과 '24년도 본예산 의결 시점으로 제출하고 있어 기금에 대한 검토는 '25년도 본예산과 '24년도 본예산을 대비하여 작성함

- 20개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8조 6,991억 9,300만원으로 계획된바, '24년도말 조성액(7조 8,903억 4,100만원)보다 10.2%, 8,088억 5,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202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 입	지 출			
합 계	7,890,341	2,625,213	1,816,361	8,699,193	808,852	1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81,382	1,484,921	779,410	7,286,894	705,512	10.7
통합계정	5,488,084	1,446,353	232,161	6,702,275	1,214,191	22.1
재정안정화계정	1,093,298	38,568	547,249	584,618	△508,680	△46.5
중소기업육성기금	187,991	262,230	378,525	71,697	△116,294	△61.8
융자계정	85,880	208,539	290,126	4,293	△81,587	95.0
투자계정	44,859	40,332	76,237	8,954	△35,905	△80.0
사회적경제계정	57,251	13,359	12,161	58,449	1,198	2.0
식품진흥기금	51,258	8,972	3,308	56,922	5,664	11.0
기후대응기금	41,579	12,567	31,485	22,660	△18,919	△45.5
도로굴착복구기금	21,976	41,925	37,581	26,320	4,344	19.7
양성평등가족기금	24,176	1,111	1,130	24,158	△18	△0.0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2,678	33,037	35,060	10,655	△2,023	△15.9
사회복지기금	52,212	11,010	23,048	40,175	△12,037	△23.0
노인복지계정	11,996	520	464	12,051	55	0.4
장애인복지계정	17,767	2,235	7,415	12,587	△5,180	△29.1
자활계정	9,086	583	887	8,782	△304	△3.3
주거지원계정	13,362	7,671	14,281	6,753	△6,609	△49.4
체육진흥기금	56,887	9,725	12,192	54,419	△2,468	△4.3
재난관리기금	682,587	669,344	480,879	871,052	188,465	27.6
재난계정	559,491	610,723	474,710	695,505	136,014	24.3
구호계정	123,096	58,620	6,169	175,547	52,451	42.6
남북교류협력기금	32,279	1,284	1,937	31,627	△652	△2.0
지역교류협력기금	1,162	1,710	2,139	734	△428	△36.8
국제개발협력기금	1,472	4,780	4,743	1,509	37	2.5
도시재생기금	37,413	31,279	1,106	67,586	30,173	80.6
관광진흥기금	7,469	297	645	7,122	△347	△4.6
서울관광진흥기금지원계정	1,794	68	645	1,218	△576	△32.1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674	229	-	5,903	229	4.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630	22,871	22,007	6,494	864	15.3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1,532	3,000	-	94,532	3,000	3.2
고향사랑기금	598	381	152	827	229	38.2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23,740	-	23,740	23,740	-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51	1,020	1,008	63	12	23.5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9 “기금조성규모” 재구성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됨
- '25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사업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는 1조 1,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5년도 일시차입한도는 1조 1,00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설정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채무부담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

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예산편성 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바, '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25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1,500억원,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434억 5,800만원, ②주택사업특별회계 4,330억원, ③도시개발특별회계 4,12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총 1조 9,388억 5,8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25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5,444억원으로 산정하여 지난 7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별도 한도액(1조 1,419억 5,800만원)은 ① 도시철도공채 발행액(6,669억 5,800만원)과 ②'25년 차환채 발행액(4,750억원)이 해당되는 바,
- '25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5,444억원)과 별도 한도액(1조 1,419억 5,800만원)을 합한 2조 6,863억 5,800만원으로 예산총칙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1조 9,388억 5,8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공채발행 및 차입금**중 일반회계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1,500억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지난 '20년 7월, 재난안전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채 1,500억원을 차환하려는 것으로
- 관련 조례는 동 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한 자원(전입금)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재난안전기금의 수입계획중 지방채를 발행(차환)하는 것이나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총칙에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 2025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행규모	총 발행규모 ①			1,938,858	
		일 반 회 계			150,000
		특 별 회 계			1,788,858
		기 금			-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②			2,686,358	
		기 본 한 도 액			1,544,400
		별 도 한 도 액			1,141,958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666,958
		'25년 차환채 발행액(50%)			475,000
		지역일자리사업 (투자사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한도내 추가발행 여력 ②-①			747,500		

〈표 2-2〉 2025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기금명 (계정명)	실·본부· 국명	부서명	사업명	'25년도 지방채 편성액	세부산출내역
총계					1,938,85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계					943,458	
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도시철도 공채	666,958	매출공채
2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20,000	국비 : 26,700 자체 : 30,049 지방채 : 20,000
3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동북선경전철 건설(민자)	89,500	국비 : 45,700 자체 : 26,872 지방채 : 89,500
4		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87,000	지방채 : 87,000
5		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7차)	80,000	국비 : 77,558 자체 : 36,805 지방채 : 8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계					433,000	
6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청계정)	주택실	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20-7호)(차환)	85,000	지방채 : 85,000
7		주택실	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23-2호)(차환)	180,000	지방채 : 180,000
8		주택실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차환)	60,000	지방채 : 60,000
9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계정)	주택실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차환)	108,000	지방채 : 108,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412,400	
10	도시개발 특별회계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차환)	280,000	지방채 : 280,000
11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25,000	자체 : 4,386 지방채 : 25,000
12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0,000	자체 : 5,000 지방채 : 30,000
13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000	자체 : 8,395 지방채 : 40,000
14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0,000	자체 : 1,100 지방채 : 10,000
15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25,000	자체 : 3,827 지방채 : 25,000
16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400	국비 : 1,800 자체 : 1,800 지방채 : 2,400
기금 소계					150,000	
17	재난관리 기금	재난안전실	재난안전 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차환)	150,000	지방채 : 150,000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①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4조 3,838억원)의 0.3%, 1,052억원, ②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252억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252억원)는 '24년도 본예산(1,212억원) 대비 3.3%, 40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보고된 '24년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25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5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세입예산의 특징

- '25년도 예산안은 '24년도 최종예산(47조 3,608억 7,700만원)보다 1.4%, 6,798억 500만원 증액된 48조 406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4년도 최종예산(34조 2,168억 4,300만원)보다 0.5%, 1,670억 3,900만원이 증액된 34조 3,838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4년도 최종예산(13조 1,440억 3,400만원)보다 3.9%, 5,1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조 6,568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 2025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합 계	48,040,683	47,360,877	679,805	1.4
일 반 회 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특 별 회 계	13,656,800	13,144,034	512,766	3.9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2)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

-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4조 3,83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4조 2,168억 4,300만원)보다 0.5%, 1,670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4〉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지방세수입		24,912,528	24,235,274	677,254	2.8
보통세		22,633,067	21,975,509	657,558	3.0
	취득세	5,600,501	5,325,753	274,748	5.2
	주민세	824,014	806,929	17,085	2.1
	재산세	3,682,864	3,532,059	150,805	4.3
	자동차세	1,116,638	1,199,481	△82,843	△6.9
	레저세	105,158	116,676	△11,518	△9.9
	담배소비세	561,574	571,727	△10,153	△1.8
	지방소비세	2,909,211	2,730,596	178,615	6.5
	지방소득세	7,833,107	7,692,288	140,819	1.8
목적세		2,052,629	2,037,565	15,064	0.7
	지역자원시설세	294,266	335,187	△40,921	△12.2
	지방교육세	1,758,363	1,702,378	55,985	3.3
지난년도수입		226,832	222,200	4,632	2.1
세외수입		1,484,111	1,471,493	12,617	0.9
경상적세외수입		869,082	863,465	5,617	0.7
	재산임대수입	201,104	183,716	17,387	9.5
	사용료수입	153,104	144,229	8,874	6.2
	수수료수입	38,820	41,640	△2,820	△6.8
	사업수입	381,755	367,492	14,263	3.9
	징수교부금수입	7,634	10,992	△3,357	△30.5
	이자수입	86,663	115,393	△28,729	△24.9
임시적세외수입		572,460	569,364	3,095	0.5
	재산매각수입	148,264	151,252	△2,987	△2.0
	자치단체간부담금	14,783	13,276	1,507	11.4
	보조금반환수입	274,464	248,251	26,213	10.6
	기타수입	134,946	156,584	△21,637	△13.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123	8,218	905	11.0
	과징금	669	920	△250	△27.2
	변상금	5,861	4,684	1,177	25.1
	과태료	2,442	2,508	△65	△2.6
	부담금	150	105	44	41.9
지난년도수입		33,443	30,445	2,998	9.8
지방교부세		86,811	143,368	△56,556	△39.4
	보통교부세	51,802	103,604	△51,802	△50.0
	특별교부세	-	2,698	△2,698	△100.0
	소방안전교부세	35,009	37,066	△2,056	△5.5
보조금		7,440,437	7,079,268	361,169	5.1
지방채		150,000	-	150,000	순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9,993	1,287,438	△977,444	△75.9
	보전수입 등	64,342	1,036,301	△971,958	△93.8
	내부거래	245,651	251,136	△5,485	△2.2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24조 2,352억 7,400만원)보다 2.8%, 6,772억 5,400만원 증액된 24조 9,125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1조 4,714억 9,300만원)보다 0.9%, 126억 1,700만원 증액된 1조 4,8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1,433억 6,800만원)보다 △39.4%, △565억 5,600만원 감액된 868억 1,100만원, **보조금**은 '24년도 최종예산(7조 792억 6,800만원)보다 5.1%, 3,611억 6,900만원 증액된 7조 4,40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의 경우, '2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25년도에는 지난 '20년 5월, 재난관리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차환하고자 1,5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년도 최종예산(1조 2,874억 3,800만원)보다 △75.9%, △9,774억 4,400만원 감액된 3,099억 9,3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1)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의 세입예산액은 '24년도 최종예산(24조 2,352억 7,400만원)보다 2.8%, 6,772억 5,400만원 증액된 24조 9,125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과 세입규모를 유사하게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경제전망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투자 증가세 둔화로 2024년 2.2%에서 2028년 2.0%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24년 9월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금리에 대한 변수가 많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규모가 크지 않아 기대심리 둔화는 물론 물가상승, 내수 부진, 고용불안 등 세수 여건에 부정적 지표가 산재해 있음

-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회계연도중 취득세수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최근 수년간 국세 수입 추계에 오차가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서울시의 경우에도 향후 정부의 세수오차 축소 방안을 참고하여 필요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세입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 2025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34,383,882	34,216,843	167,039	0.5
지	방 세 수 입	24,912,528	24,235,274	677,254	2.8
보	통 세	22,633,067	21,975,509	657,558	3
	취 득 세	5,600,501	5,325,753	274,748	5.2
	주 민 세	824,014	806,929	17,085	2.1
	재 산 세	3,682,864	3,532,059	150,805	4.3
	자 동 차 세	1,116,638	1,199,481	△82,843	△6.9
	레 저 세	105,158	116,676	△11,518	△9.9
	담 배 소 비 세	561,574	571,727	△10,153	△1.8
	지 방 소 비 세	2,909,211	2,730,596	178,615	6.5
	지 방 소 득 세	7,833,107	7,692,288	140,819	1.8
목	적 세	2,052,629	2,037,565	15,064	0.7
	지역 자원 시설세	294,266	335,187	△40,921	△12.2
	지 방 교 육 세	1,758,363	1,702,378	55,985	3.3
지	난 년 도 수 입	226,832	222,200	4,632	2.1

○ **취득세**는 '24년도 최종예산(5조 3,257억 5,300만원)보다 5.2%, 2,747억 4,800만원 증액된 5조 6,005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및 대출 금리변동, 자동차 교체수요 등에 의하여 세수의 증감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임

- '24년 3월 이후 부동산 취득세 신고 건수 및 매매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의 일부 회복으로 '24년도 대비 2,747억원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채무비율을 감소시키고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소극적이고, '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는데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축소하고 있는 등 부동산 거래 둔화요인이 현재로서는 우세하여 세수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주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측되었던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취득세 세수증가로 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취득세 증수분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 지난 '17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액(4조 70억 5,400만원)보다 32.1%, 1조 2,881억 5,600만원이 초과수납된 사례가 있고, '18회계연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부동산 거래둔화 및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세입예산액(4조 3,946억 2,300만원) 보다 7,971억 1,4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 '19회계연도에도 부동산 거래 둔화를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2,737억 8,800만원) 보다 1조 3,170억 1,800만원 초과수납 되었으며, '20회계연도에도 당초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과는 달리 결산결과 당초 세입예산액(4조 6,329억 6,700만원) 보다 2조 8,377억 6,4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21회계연도에도 당초 세입예산액(5조 589억 3,700만원) 보다 2조 9,510억 9,800만원 초과수납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25년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며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억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요인 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입예산 편성당시의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기반으로 회계연도중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현황과 부동산거래 전인요인 등을 파악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세**는 '24년도 최종예산(8,069억 2,900만원)보다 2.1%, 170억 8,500만원 증액된 8,240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취업자수, 임금상승률, 세액신장률 등에 의하여 세수가 변동될 수 있는 세원임

-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민세 수입은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기재한 바, 균등분 주민세는 세입 변동성은 낮으나, 개인·법인 사업자의 증가(사업소분) 및 임금 상승(종업원분)으로 세입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한 것으로 검토되나, 1인 가구 증가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소폭이나마 주민세중 개인분에 대한 증수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 2025년도 주민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2025년도 추계 ^{주1)} (A)	2024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824,014	806,929	800,830	17,085	2.1	23,184	2.9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재산세**는 '24년도 최종예산(3조 5,320억 5,900만원)보다 4.3%, 1,508억 500만원 증액된 3조 6,828억 6,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중 ①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의 50%로 산출하여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는 '24년 본예산(1조 6,727억 3,400만원) 대비 5.2%, 864억 1,400만원 증액한 1조 7,591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표 2-7〉 특별시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818,860	1,678,234	1,672,734	1,759,148
징수액	1,886,185	1,659,530	1,713,906	-
결산율	103.7	98.9	102.5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재산세중 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각각 진출되는 재원으로, '24년 본예산(1조 8,593억 2,500만원) 대비 3.5%, 643억 9,100만원 증액한 1조 9,237억 1,600만원을 편성한 바,
- 정부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 등으로 세수감소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연계되어 추가적인 세입 증가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8〉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2,008,732	1,843,845	1,859,325	1,923,716
징수액	2,032,700	1,815,403	1,867,915	
결산율	101.2	98.5	100.5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자동차세**는 '24년도 최종예산(1조 1,994억 8,100만원)보다 △6.9%,

△828억 4,300만원 감액된 1조 1,166억 3,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자동차세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됨

〈표 2-9〉 2025년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주1)} (A)	2024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116,638	1,199,481	990,708	△82,843	△6.9	125,930	12.7
소 유 분	622,317	641,082	617,930	△18,765	△2.9	4,387	0.7
주 행 분	494,321	558,399	372,778	△64,078	△11.5	121,543	32.6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소유분 자동차세**(6,223억 1,700만원)의 경우, '24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 약 318만 1,927대로 전년도 동월 기준보다 △1만 432대 감소하였고, 지난 '20년 1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 할인 공제율을 '25년도 이후에는 '24년도(5%)보다 △2%포인트 축소된 3%로 정하여 '25년도부터 세입 감소요인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6일 자동차세 선납 할인 공제율을 과세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존 법령을 과세연도 구분없이 100분의 5로 개정하는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어 세입 감소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현재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의 등록 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가 차량가격, 차량중량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세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세

목에 대한 유동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표 2-10〉 소유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616,400	642,485	641,082	622,317
징수액	626,038	631,005	617,930	
결산율	101.6	98.2	96.4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주행분 자동차세**(4,943억 2,100만원)의 경우에는 '24년도 본예산(5,583억 9,900만원)보다 △11.5%, △640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4년도 12월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휘발유 등에 대한 인하율 축소와 '25년도 교통세(국세) 예산 감소 등의 사유로 '25년도 주행분 자동차세 증수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동차 구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선호하고 있어 세수감소 요인이 있으나,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행분 자동차세의 세수전망 또한 회계연도 개시이후 다양한 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1〉 주행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600,132	409,954	558,399	494,321
징수액	399,766	363,645	372,778	
결산율	66.6	88.7	66.8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목으로 '24년도 최종예산(1,166억 7,600만원)보다 △9.9%, △115억 1,800만원 감액된 1,051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2〉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29,891	106,133	116,676	105,158
징수액	100,296	105,128	105,134	
결산율	335.5	99.1	90.1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로 '24년도 최종예산(5,717억 2,700만원)보다 △1.8%, △101억 5,300만원 감액된 5,615억 7,400만원을 편성한 바, 정부의 금연정책 및 흡연률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3〉 담배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571,531	582,205	571,727	561,574
징수액	588,594	576,611	561,743	
결산율	103.0	99.0	98.3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지방소비세**는 '24년도 최종예산(2조 7,305억 9,600만원)보다 6.5%, 1,786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9,092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납입관리자(세종특별자치시장)가 시·도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동 세목은 물가상승, 소비심리 둔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는 '25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을 '24년도(81조 4,068억원)보다 6조 6,133억원(8.1%) 증액된 88조 201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모(6.5%)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에 소비지출 보전분 비율(5%)과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①**소비지출 보전분**, 부가가치세 예산에 취득세 등 보전분 비율(6%)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는 ②**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비율(14.3%)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③**전환사업 등 보전분**으로 구성되는 바,

〈표 2-14〉 2025년도 지방소비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추계 ^{주1)} (A)	2024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2,909,211	2,730,596	2,782,020	178,615	6.5	127,191	4.6
소 비 지 출 (5 %)	760,510	707,814	705,207	52,696	7.4	55,303	7.8
취득세보전 (6 %)	889,629	901,406	846,206	△11,777	△1.3	43,423	5.1
전 환 사 업 (14.3 %)	1,259,072	1,121,376	1,230,607	137,696	12.3	28,465	2.3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25년도 서울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출분(5%), 취득세보전분(6%), 전환사업 보전분에 적용되어야 할 '25년도 서울시 안분율이 확정되지 않아 '24년도 안분율(12.91%)을 적용한 것으로 안분율 확정후 세수에 증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세목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7조 6,922억 8,800만원)보다 1.8%, 1,408억 1,900만원 증액된 7조 8,331억 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5년도 시세 추계액의 31.4%를 점유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는 세목으로서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세목으로 사료됨

- 기획재정부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수입중 ①종합소득세는 '24년도 예산 대비 △4,611억원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②법인세는 '24년도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24년도 예산 대비 10조 8,36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③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24년도 대비 1.7% 인상)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2조 6,9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④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24년 예산대비 △1조 8,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 서울시의 경우, ①종합소득분은 '24년 보다 △3.4%, △325억 1,200만원 감액편성하고, ②법인소득분은 '24년 대비 △2.5%, △567억 1,5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으나,
- ③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서울시 생활임금도 상승하였고, 임시직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어 세입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24년도(3조 7,481억 5,400만원) 대비 5.9%, 2,196억 7,700만원 증가된 3조 9,678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④양도소득분의 경우에도 '24년도(7,130억 2,500만원)보다 1.5%, 103억 6,900만원 증액된 7,233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4년도 3월 이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5〉 2025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25년도 예산안 ^{주1)}	'24년도 최종예산 ^{주2)}	증·감	증감률
계	7,833,107	7,692,288	140,819	1.8
①종합소득분	924,409	956,921	△32,512	△3.4
②양도소득분	723,394	713,025	10,369	1.5
③법인소득분	2,217,473	2,274,188	△56,715	△2.5
④특별징수분	3,967,831	3,748,154	219,677	5.9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소득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소득 증가분이 발생되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24년 8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가 '25년도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보고 있어 저성장 기조 또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6〉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2년도 ^{주1)}	'23년도 ^{주1)}	'24년도 전망 ^{주2)}	'25년도 추계 ^{주3)}
예산액	6,052,140	7,933,937	7,692,288	7,833,107
징수액	8,834,457	7,983,158	7,466,920	
결산율	146.0	100.6	97.1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24년도 최종예산(3,351억 8,700만원)보다 △

12.2%, △409억 2,100만원 감액된 2,942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지하수, 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해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선박에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화력발전소의 '25년도 발전예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4년도 전망 결산율이 '23년도 보다 △7.0%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25년도 세입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7〉 202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25년도 예산안 ^{주1)}	'24년도 예산 ^{주2)}	'24년도 전망	증·감	증감률
계	294,266	335,187	292,384	△40,921	△12.2
특정자원분	107	106	109	1	0.9
특정시설분	3,004	1,286	2,883	1,718	133.6
소방분	291,155	333,795	289,392	△42,640	△12.8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중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추계 후 세목별 세율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세목으로 '24년도 최종예산(1조 7,023억 7,800만원)보다 3.3%, 559억 8,500만원 증액된 1조 7,583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18〉 2025년도 지방교육세 세목별 추계액

(단위 : 백만원)

과목명	2025년도 예산안 ^{주1)}	세율 ^{주2)}	지방교육세 추계액
합 계	7,697,966		1,758,363
부동산취득세	2,441,040	20.0%	488,208
재산세	3,526,892	20.0%	705,378
균등분 주민세	50,070	25.0%	12,518
자동차세	605,141	30.0%	181,542
레저세	105,158	40.0%	42,063
담배소비세	561,574	43.99%	247,036
등록면허세	408,091	20.0%	81,618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4.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0659 ('24.10.29) “2025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세외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1조 4,714억 9,300만원)보다 0.9%, 126억 1,700만원 증액된 1조 4,841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9〉 202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세 외 수 입		1,484,111	1,471,493	12,617	0.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69,082	863,465	5,617	0.7
	재 산 임 대 수 입	201,104	183,716	17,387	9.5
	사 용 료 수 입	153,104	144,229	8,874	6.2
	수 수 료 수 입	38,820	41,640	△2,820	△6.8
	사 업 수 입	381,755	367,492	14,263	3.9
	징수교부금수입	7,634	10,992	△3,357	△30.5
	이 자 수 입	86,663	115,393	△28,729	△24.9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72,460	569,364	3,095	0.5
	재 산 매 각 수 입	148,264	151,252	△2,987	△2.0
	자치단체간부담금	14,783	13,276	1,507	11.4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74,464	248,251	26,213	10.6
	기 타 수 입	134,946	156,584	△21,637	△13.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123	8,218	905	11.0
	과 징 금	669	920	△250	△27.2
	변 상 금	5,861	4,684	1,177	25.1
	과 태 료	2,442	2,508	△65	△2.6
	부 담 금	150	105	44	41.9
	지 난 년 도 수 입	33,443	30,445	2,998	9.8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8,634억 6,500만원)보다 0.7%, 56억 1,700만원 증액된 8,690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837억 1,600만원)보다 9.5%, 173억 8,700만원 증액한 2,011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서울국제금융센터부지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442억 2,900만원) 대비 6.2%, 88억 7,400만원 증액한 1,531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남산순환로 통행료 수입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894억 6,400만원), 하천사용료(67억 4,800만원), 운동장·공연장 등의 입장료수입(209억 7,900만원), 주차요금수입(86억 1,400만원), 기타사용료(272억 9,800만원)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수수료수입**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416억 4,000만원)대비 △6.8% △28억 2,000만원 감액한 388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 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의료사업 수입인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을 '24년도보다 △28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3,674억 9,200만원)보다 3.9%, 142억 6,300만원 증액된 3,817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1,716억 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1,110억 7,700만원) 등을 포함한 것임
 - 다만,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경우, 지난 '20년도 본예산부터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매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용지가 매각 수입에 있어 허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매각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세입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각될 경우 추경이나 결산결과 실수납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징수교부금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109억 9,200만원)보다 △30.5%, △33억 5,700만원 감액된 76억 3,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48억 4,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26억 2,100만원)이 주요 수입 내역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153억 9,300만원)보다 △24.9%, △287억 2,900만원 감액한 866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공운용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년도(997억 9,500만원)보다 △295억 3,900만원 감액된 702억 5,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회계연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감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5,693억 6,400만원)보다 0.5%, 30억 9,500만원 증액된 5,724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12억 5,200만원)보다 △2.0%, △29억 8,700만원 감액한 1,482억 6,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1,480억 2,1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2억 4,300만원)으로 구성됨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이나 수혜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32억 7,600만원)보다 11.4%, 15억 700만원 증액 편성한 147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시비보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반환수입**은 '24년도 최종예산(2,482억 5,100만원)보다 10.6%, 262억 1,300만원 증액된 2,744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기타수입**은 금년도 예산(1,565억 8,400만원)보다 △216억 3,700만원 감소한 1,349억 4,600만원을 편성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82억 1,800만원)보다 11.0%, 9억 500만원 증액된 91억 2,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법령상 의무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은 '25년도 예산안중 금년도예산(9억 2,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 감액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령 및 계약위반 등에 따른 **변상금**은 금년도예산(46억 8,400만원)보다 11억 7,700만원 증액한 58억 6,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질서 및 의무이행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인 **과태료**는 '25년도 예산안중 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25억 800만원) △6,5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금년도보다(1억 500만원) 4,4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은 추계에 한계가 있기에 실제 수납률에 대한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매년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한 사례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원관리, 변동요인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 세수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25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433억 6,800만원)보다 △39.4%, △565억 5,600만원 감액된 868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표 2-20〉 2025년도 지방교부세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지 방 교 부 세		86,811	143,368	△56,556	△39.4
	보 통 교 부 세	51,802	103,604	△51,802	△50.0
	특 별 교 부 세	-	2,698	△2,698	△100.0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5,009	37,066	△2,056	△5.5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 '25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1,036억 400만원)보다 △50.0%, △518억 200만원 감액된 5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금년 12월 중 보통교부세 확정 교부액을 통보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변동 여지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70억 6,600만원)보다 △5.5%, △20억 5,600만원 감액된 350억 900만원으로 편성한 바,

- '25년도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4년도 10월,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예상금액 사전통지에 따른 것으로, '24년 12월 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로 확정 통보될 경우, 편성요청된 교부액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5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9조를 통해 간주처리 규정을 두고 있어 추가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간주처리하고, 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전액 통보되지 않고 정부예산 확정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액이 변경되어 통보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밀성과 안정적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임

- '24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26억 9,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간주처리를 통해 집행된 사례가 있어 '25년도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안중 특별교부세 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임

○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4년도 최종예산(7조 792억 6,800만원)보다 5.1%, 3,6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7조 4,40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생계급여, 영아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6조 6,927억 100만원)보다 5.7%, 3,838억 4,600만원 증액된 7조 76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870억 8,800만원)보다 △20.2%, △176억 200만원 감액된 69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기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2,994억 7,900만원)보다 △1.7%, 50억 7,400만원 감액된 2,944억 400만원을 국비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

는 세입과목으로 '23년도~'24년도는 일반회계 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25년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을 위한 모집공채 1,5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2,874억 3,800만원)보다 △75.9%, 9,774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한 것임

○ '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64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20억 8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538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부거래**는 2,456억 5,1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56억 5,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조 6,56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3조 1,440억 3,400만원)보다 3.9%, 5,127억 6,600만원 증액편성한 것임

○ '25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21〉 2025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5		2 0 2 4		증 감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륜
총 계	48,040,683	100.0%	47,360,877	100.0%	679,805	1.4
일 반 회 계	34,383,882	71.6	34,216,843	72.2	167,039	0.5
특 별 회 계	13,656,800	28.4	13,144,034	27.8	512,766	3.9
공 기업 특 별 회 계	1,940,112	4.0	1,913,845	4.0	26,266	1.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30,000	2.1	970,000	2.0	60,000	6.2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10,112	1.9	943,845	2.0	△33,733	△3.6
기 타 특 별 회 계	11,716,688	24.4	11,230,188	23.7	486,500	4.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1조 2,301억 8,800만원)보다 4.3%, 4,865억원 증액된 11조 7,16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표 2-22〉 2025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5	2 0 2 4	증 감	
	예 산 안	최 종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1,716,688	11,230,188	486,500	4.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20,620	2,127,178	△306,557	△14.4
교통사업특별회계	1,640,507	1,731,004	△90,497	△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7,560	224,692	△147,132	△65.5
주택사업특별회계	3,077,636	2,418,702	658,934	27.2
도시개발특별회계	1,975,637	1,694,889	280,748	16.6
균형발전특별회계	249,823	176,620	73,203	41.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485	9,594	1,891	1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22,188	1,789,628	32,559	1.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680	31,871	△2,190	△6.9
소 방 특 별 회 계	1,011,548	1,026,006	△14,458	△1.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1,271억 7,800만원)보다 △14.4%, △3,065억 5,700만원 감액된 1조 8,20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 국고보조금 등을 금년도보다 258억 6,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예수금 수입이 금년도보다 △625억 3,500만원 감액편성되고, 지방채도 금년도보다 △2,365억 700만원 감액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3,065억 5,7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7,310억 400만원)보다 △5.2%, △904억 9,700만원 감액된 1조 6,405억 7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예수금 수입이 금년도보다 1,235억원 증액편성하였으나, 전입금은 금년도보다 △1,394억 5,400만원 감액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658억 9,6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246억 9,200만원)보다 △65.5%, △1,471억 3,200만원 감액된 775억 6,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보다 △42억 5,400만원 감액편성하고, 예수금수입을 금년도보다 △473억원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4,187억 200만원)보다 27.2%, 6,589억 3,400만원 증액된 3조 77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예수금수입을 금년도보다 △988억원 감액편성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보다 667억 500만원 증액편성하고, 잉여금도 금년도보다 1,226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6,948억 8,900만원)보다 16.6%, 2,807억 4,800만원 증액된 1조 9,756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을 금년도보다 △532억 3,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나,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3,156억원 증액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766억 2,000만원)보다 41.4%, 732억 300만원 증액된 2,498억 2,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금년도보다 1,631억 3,4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금년도보다 12억 5,200만원 증액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재산매각수입 1,631억 3,400만원)을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 편성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1,716억 200만원)의 경우에도 실제 매각이나 세수확보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회계연도중 해당 부지가 실제 매각되지 않는다면 동 회계의 세출재원이 그 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95억 9,400만원)보다 19.7%, 18억 9,100만원 증액된 114억 8,5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52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7,896억 2,800만원)보다 1.8%, 325억 5,900만원 증액된 1조 8,221억 8,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602억 5,5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18억 7,100만원)보다 △6.9%, △21억 9,000만원 감액된 296억 8,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고보조금등이 △26억 5,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260억 600만원)보다 △1.4%, △144억 5,800만원 감액된 1조 115억 4,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전입금이 △101억 3,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3〉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 회계	전입 회계				
일반 → 특별		4,380,093	4,563,032	△182,939	
일반 회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746,097	724,575	21,522	▶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일반전입금 증가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221,491	253,151	△31,659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세입추계액 감소
	의료급여기금	849,892	789,576	60,316	▶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	332,253	470,735	△138,481	▶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감소 및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 전입금 감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	192,371	191,445	925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	29,233	△29,233	▶ 임대보증금 등 세입 증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192,371	191,445	925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	192,371	191,445	925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1,346,601	1,340,121	6,479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균형발전특별회계	-	67,957	△67,957	▶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 신규 발굴 등 세입 증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06,641	303,271	3,369	▶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수입 등 감소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10,072	△10,072	▶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추진 지연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표 2-24〉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2,201	43,850	△1,648	
한 강 수 질 개 특 별 회 계	공 하 사 특 공 기 수 업 도 업 계	3,350	3,037	313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공 하 사 특 공 기 수 업 도 업 계	12,139	14,594	△2,455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3,179	3,170	9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08	823	△15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공 하 수 업 도 특 별 회 계	한 강 수 질 개 특 별 회 계	225	225	△0.5	▶ '24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집행 잔액 발생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2,500	22,000	500	▶ 2025년 하수도사용료 및 과년도 체납 징수 전망치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38.7%), 공채 및 차입금(5.8%), 국고보조금 등(11.6%)은 증액편성한 것이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5.4%), 지방교부세(△20.1%)는 감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5〉 2025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구 성 비	2024	구 성 비	증 감	
	예 산 안		최 종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1,716,688	100.0	11,230,188	100.0	486,500	4.3
자 체 수 입	1,946,871	16.6	1,404,005	12.5	542,866	38.7
경상적세외수입	1,278,119		858,150		419,969	48.9
임시적세외수입	267,063		73,169		193,894	265.0
지방행정제재금 · 부 과 금	401,687		472,685		△70,998	△15.0
지난연도 수입	20,120		23,107		△2,987	△12.9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6,066,622	51.8	6,412,509	57.1	△345,887	△5.4
보 전 수 입 등	393,630		536,722		△143,092	△26.7
순세계잉여금	368,806		498,371		△129,565	△26.0
전년도이월금	2,888		19,307		△16,419	△85.0
융자금원금수입	21,741		19,043		2,698	14.2
보조금등반환금	193		-		193	순증
내 부 거 래	5,672,992		5,875,787		△202,795	△3.5
전 입 금	4,380,318		4,555,083		△174,765	△3.8
예탁금및예수금	1,292,674		1,320,704		△28,030	△2.1
지 방 교 부 세	6,900	0.1	8,640	0.1	△1,740	△20.1
공 채 및 차 입 금	1,788,858	15.3	1,690,765	15.1	98,093	5.8
국 고 보 조 금 등	1,887,316	16.1	1,691,160	15.1	196,156	1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202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서」 재구성

-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6,907억 6,500만원)보다 980억 9,200만원 증액된 1조 7,888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26〉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5 (예 산 안)	2 0 2 4 (최 종 예 산)	증 감	증 감 륜
계		1,788,858	1,690,765	98,092	5.8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943,458	1,179,965	△236,507	△20.0
	매 출 공 채	666,958	665,965	992,372	0.1
	모 집 공 채	276,500	294,000	△17,500	△6.0
	정 부 자 금 채	-	220,000	△220,000	순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	90,000	△90,000	순감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모 집 공 채)		433,000	324,000	109,000	33.6
	모 집 공 채	433,000	144,000	289,000	200.7
	정 부 자 금 채	-	180,000	△180,000	순감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12,400	96,800	315,600	326.0
	모 집 공 채	410,000	50,000	360,000	720.0
	정 부 자 금 채	2,400	6,800	△4,400	△64.7
	지 방 공 공 자 금 채	-	40,000	△40,000	순감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매출공채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비용인 도시철도매출공채 6,669억 5,800만원과 도시철도 공채 차환(870억원), 노후전동차 교체(800억원), 9호선 4단계 건설

(200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895억원)을 위한 모집공채 2,765억원을 차입하고자 금년도(1조 1,799억 6,500만원)보다 △2,365억 700만원 감액된 9,434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차환을 위한 모집공채 4,330억원을 차입하고자 금년도(3,240억원)보다 1,09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24억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4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25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300억원),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100억원), 양재대로 구조개선(25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차환(2,8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968억원)보다 3,156억원 증액된 4,124억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최종예산(1조 6,941억 1,600만원)보다 1,936억 8,300만원 증액된 1조 8,87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7〉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5 (예 산 안)	2 0 2 4 (최 종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887,800	1,694,116	193,683	11.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9,977	150,402	29,574	19.7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65,476	59,946	5,530	9.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20	4,100	△680	△16.6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465,190	338,099	127,091	37.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36,270	56,916	79,354	139.4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57,809	54,191	3,617	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49,831	789,576	160,255	20.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286	28,941	△2,655	△9.2
소 방 특 별 회 계	3,054	3,443	△388	△11.3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484	1,956	△1,472	△75.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000	△1,000	순감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01)”으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 되어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령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이월금,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당해 연도('24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5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자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은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해당 특별회계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미리 소진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예산의 건전재정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초치 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8〉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 별 회 계	'25 예산안 편성 ^{주1)} (순세계잉여금)	'24 본예산 편성(A) ^{주2)} (순세계잉여금)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B) ^{주3)} (순세계잉여금)	추 증 요 경 · 청 안 감 액 (C)=(B)-(A)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54,867	108,305	70,661	△37,64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5,134	△213	△5,347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38,348	199,552	115,680	△83,87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6	76,320	31,367	△44,95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50	5,130	205,874	200,744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96	169	284	115
소 방 특 별 회 계	26,276	28,023	30,776	2,753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2,339	50,903	123,134	72,231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4.11. 1)

주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지난 '24년도 본예산 편성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한 바,
- '24년 6월, '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①교통사업특별회계 △376억 4,4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3억 4,7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838억 7,200만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449억 5,3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58개 사업, 4조 1,416억원이며, 금년도 본예산(271개 사업, 4조 930억원) 대비 △13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485억 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 235개(3조 8,764억 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사업(2,643억 6,700만원) 20개, 기금 사업 3개(8억 5,0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9〉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258	4,141,632	4,093,073	48,559	1.1
	예 산	255	4,140,781	4,092,050	181,151	1.2
	일 반 회 계	235	3,876,414	3,814,491	61,923	1.6
	특 별 회 계	20	264,367	277,559	△13,192	△4.7
	기 금	3	850	1,023	△173	△16.9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7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69억 9,900만원(39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2,845억 7,200만원(27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2조 1,836억 9,000만원(92개 사업), 기타사업 1조 3,163억 7,100만원(100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32개 실·본부·국에 258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가족실 70개 사업(1조 6,671억 1,200만원), 복지실 41개 사업(1조 5,953억 6,600만원), 경제실 18개 사업(2,481억 5,300만원), 주택실 7개 사업(1,580억 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8.6%, 3조 6,686억원이 여성가족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 예산편성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본부·국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0〉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58개 사업	4,141,632	100	4,093,073	100	48,559	1.1
필수	양 성 평 등 정 책 추 진 사 업 주 1)	356,999	8.6	364,395	8.8	△7,396	△2.0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주 2)	284,572	6.9	388,493	9.4	△103,921	△26.7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주 3)	2,183,690	52.7	2,128,646	51.4	55,045	2.5
	기 타 사 업 주 4)	1,316,371	31.8	1,211,540	29.3	104,831	8.6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8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79)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주4) 기타사업

-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표 2-31〉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총 계	258	4,141,632	100.00	4,093,073	100.00	48,559	1.19
홍 보 기 획 관	2	8,809	0.21	8,922	0.22	△113	△1.27
여 성 가 족 실	70	1,667,112	40.25	1,696,875	41.46	△29,763	△1.75
글로벌도시정책관	8	10,766	0.26	10,098	0.25	668	6.61
비 상 기 획 관	1	474	0.01	454	0.01	20	4.34
미 래 청 년 기 획 관	8	85,508	2.06	84,735	2.07	773	0.91
기 획 조 정 실	2	775	0.02	1,124	0.03	△349	△31.09
소 방 재 난 본 부	5	3,397	0.08	3,946	0.10	△549	△13.91
경 제 실	18	248,153	5.99	249,180	6.09	△1,027	△0.41
복 지 실	41	1,595,366	38.52	1,491,217	36.43	104,149	6.98
교 통 실	5	90,858	2.19	85,954	2.10	4,904	5.70
기 후 환 경 본 부	3	3,844	0.09	3,098	0.08	746	24.08
문 화 본 부	12	13,640	0.33	12,231	0.30	1,409	11.52
관 광 체 육 국	5	36,019	0.87	35,448	0.87	571	1.61
평 생 교 육 국	8	62,107	1.50	57,550	1.41	4,557	7.92
시 민 건 강 국	17	83,771	2.02	88,284	2.16	△4,513	△5.11
민 생 노 동 국	10	51,056	1.23	55,626	1.36	△4,570	△8.22
디 지 털 도 시 국	3	1,271	0.03	1,233	0.03	38	3.08
행 정 국	8	6,375	0.15	7,985	0.20	△1,609	△20.16
미 래 공 간 기 획 관	-	-	0.00	300	0.01	△300	△100.0
디 자 인 정 책 관	1	1,212	0.03	2,407	0.06	△1,195	△49.64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39	0.00	33	0.00	6	18.41
재 난 안 전 실	2	1,296	0.03	1,194	0.03	102	8.52
주 택 실	7	158,003	3.82	172,206	4.21	△14,202	△8.25
도 시 공 간 본 부	1	436	0.01	360	0.01	76	21.08
균 형 발 전 본 부	3	1,098	0.03	713	0.02	385	54.04
정 원 도 시 국	3	3,319	0.08	18,465	0.45	△15,145	△82.02
물 순 환 안 전 국	1	355	0.01	346	0.01	9	2.58
미 래 한 강 본 부	2	3,433	0.08	1,753	0.04	1,680	95.80
서울역사박물관	3	2,361	0.06	625	0.02	1,736	277.80
시 립 미 술 관	2	281	0.01	266	0.01	15	5.55
감 사 위 원 회	1	72	0.00	91	0.00	△19	△20.4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	425	0.01	355	0.01	70	19.71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10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5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39개 정책사업목표, 56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24년도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28개 정책사업목표, 555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5년도에는 성과계획 지표를 세분화함에 따라 지표 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2〉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9	239	447	567	46,100,571	43,918,694	2,181,877
대 변 인	1	1	2	2	2,260	1,826	433
홍 보 기 획 관	1	5	11	12	73,040	69,304	3,736
여 성 가 족 실	1	8	14	21	3,227,126	3,247,755	△20,629
글로벌도시정책관	1	4	8	6	52,799	46,420	6,379
비 상 기 획 관	1	1	2	7	7,914	7,089	825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	2	4	4	104,521	114,507	△9,985
기 획 조 정 실	1	11	19	21	964,745	961,309	3,436
소 방 재 난 본 부	1	10	24	19	1,979,138	1,977,462	1,676
경 제 실	1	11	23	23	625,315	625,687	△372
복 지 실	1	10	18	30	11,120,656	10,708,676	411,979
교 통 실	1	10	18	20	3,254,482	3,169,150	85,331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3	27	588,933	609,385	△20,453
문 화 본 부	1	10	12	35	626,630	613,241	13,389
관 광 체 육 국	1	5	9	18	292,985	281,454	11,531
평 생 교 육 국	1	6	9	13	4,349,319	4,337,532	11,787
시 민 건 강 국	1	12	29	25	693,041	632,019	61,021
민 생 노 동 국	1	8	13	22	192,372	237,731	△45,359
디 지 털 도 시 국	1	8	15	18	161,544	165,838	△4,294
행 정 국	1	8	12	13	4,670,029	4,547,779	122,250
재 무 국	1	6	12	12	3,264,401	3,142,642	121,759
민 생 사 법 경 찰 국	1	2	4	3	1,309	1,614	△305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4	9	7	58,702	17,988	40,714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6	61,204	60,528	677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4	7	6	7,322	4,904	2,418
재 난 안 전 실	1	10	17	31	1,540,017	1,124,105	415,913
주 택 실	1	12	21	29	4,342,988	3,428,139	914,849
도 시 공 간 본 부	1	9	9	14	42,036	30,314	11,723
균 형 발 전 본 부	1	10	13	18	1,537,921	1,485,346	52,575
정 원 도 시 국	1	13	19	43	690,837	445,414	245,424
물 순 환 안 전 국	1	3	4	8	218,647	273,288	△54,641
인 재 개 발 원	1	1	3	4	17,688	19,722	△2,033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9	6	1,097,071	1,281,532	△184,461
미 래 한 강 본 부	1	2	5	8	120,507	132,235	△11,728
서울역사박물관	1	2	4	6	20,489	18,335	2,154
시 립 미 술 관	1	1	6	4	23,891	31,737	△7,846
의 회 사 무 처	1	3	27	9	41,161	36,992	4,169
감 사 위 원 회	1	5	8	7	1,653	1,617	3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4	4	1,212	1,166	46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6	24,666	26,911	△2,246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첨부서류, p.154

3) 참여예산

- 참여예산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음
- 먼저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23년도부터 **시민 속의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시민 제안형예산**중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광역단위 사업'은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3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개선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광역	기획제안형	기획제안형	광역제안형	광역제안형
지역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486('24. 1.17)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구성

-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3년도까지는 자치구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구제안형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4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청년자율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5년도 참여예산은 총 30개 사업, 1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시민참여예산**은 20개 사업, 64억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자율예산**은 10개 사업, 51억 1,900만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4〉 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24년도 본예산		증감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계	30	11,569	26	9,727	4	1,842
시민참여예산	20	6,450	16	7,300	4	△850
청년자율예산	10	5,119	10	2,427	-	2,692

○ 다만,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경우, 편성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안에 편성요청될 필요가 있으나, 2025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결과보고를 확인하면, 서울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소관부서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선정한 10개 사업에 대해 “청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투표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선호도를 투표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예산과정에 청년의 니즈(needs)를 담기위한 과정임에도 정작 선호도 투표에 이르러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투표권을 확대한다면 도출된 선호도가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 모두의 보편성을 지향하려는 것인지 모호해질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호도 투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4)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20개 기금(28계정)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를 249조 1,255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재정 규모**를 49조 8,245억원으로 전망한 바,
 -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80조 1,447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36조 289억원으로 전망하며 **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를 68조 9,777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13조 7,955억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하였음

〈표 2-35〉 재정규모(총계규모)^{주1)}

(단위 : 억원, %)

구분	2024년도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규모	비중	증가율
계	473,609	480,407	489,002	495,122	506,517	520,177	498,245	100.0	2.0
일반회계	342,168	343,839	350,918	358,920	368,851	378,919	360,289	72.3	2.5
특별회계	131,440	136,568	138,084	136,202	137,666	141,527	137,955	27.7	0.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4.11), p.18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세입전망**의 경우, 총규모 249조 1,225억원, 연평균 규모 49조 8,245억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지방세수입**의 경우, 총규모 131조 7,660억원, 연평균 규모 26조
3,532억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2.8%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세외수입**의 경우, 총규모 26조 5,318억원, 연평균 규모 5조 3,064억원
으로 연평균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이전재원**의 경우, 총규모는 57조 8,400억원, 연평균 규모는 11조 5,680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1.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총규모 32조 9,843억원, 연평균 규모 6조 5,969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36〉 세입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규모	비중	증가율
계	2,491,225	480,407	489,002	495,122	506,518	520,177	498,245	100	2.0
지방세수입	1,317,660	249,125	256,070	263,268	270,730	278,467	263,532	52.9	2.8
세 외 수 입	265,318	52,364	52,885	52,158	52,969	54,942	53,064	10.7	1.2
이 전 재 원	578,400	113,608	115,665	114,312	116,781	118,034	115,680	23.2	1.0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329,843	65,309	64,381	65,384	66,036	68,733	65,969	13.2	1.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4.11), p.23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249조 1,225억원, 연평균 규모 49조 8,245억원으로 전망하고
- 회계간전출(규모 24조 3,809억원, 연평균 4조 8,762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총규모 224조 7,416억원으로 연평균 44조 9,4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7〉 세출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규모	증가율
총 계 규 모	2,491,225	480,407	489,002	495,122	506,517	520,177	498,245	2.0
회 계 간 전 출	243,809	44,223	47,755	48,827	50,030	52,974	48,762	4.6
순 계 규 모	2,247,416	436,184	441,247	446,295	456,487	467,203	449,483	1.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4.11), p.24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의 경우, 계획기간 순계규모(총규모 224조 7,41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총규모 11조 4,379억원)와 재무활동(총규모 16조 1,398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총규모는 197조 1,637억원으로,

- ①**사회복지** 2025년도부터 2029년도 사업기간 동안 91조 2,823억원(40.6%), ②**자치구지원** 35조 4,173억원(15.8%), ③**교육청지원(법정의무)** 20조 4,913억원(9.1%), ④**공원·환경** 12조 3,376억원(5.5%), ⑤**도로·교통** 10조 2,717억원(4.6%) 등으로 배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주1)}

(단위 : 억원, %)

구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순계규모	2,247,416 (100.0)	436,184 (100.0)	441,247 (100.0)	446,295 (100.0)	456,487 (100.0)	467,203 (100.0)
사 업 비	1,971,637 (87.7)	375,798 (86.2)	385,816 (87.4)	393,615 (88.2)	404,779 (88.7)	411,629 (88.1)
사 회 복 지	912,823 (40.6)	174,496 (40.0)	177,455 (40.2)	181,829 (40.7)	186,643 (40.9)	192,400 (41.2)
도 로 · 교 통	102,717 (4.6)	21,143 (4.8)	22,570 (5.1)	19,389 (4.3)	20,006 (4.4)	19,609 (4.2)
공 원 · 환 경	123,376 (5.5)	23,737 (5.4)	23,745 (5.4)	24,413 (5.5)	25,439 (5.6)	26,042 (5.6)
도 시 안 전	94,039 (4.2)	17,676 (4.1)	18,459 (4.2)	19,111 (4.3)	20,143 (4.4)	18,650 (4.0)
문 화 관 광	49,573 (2.2)	9,546 (2.2)	9,359 (2.1)	9,656 (2.2)	10,363 (2.3)	10,649 (2.3)
산 업 경 제	43,350 (1.9)	7,980 (1.8)	8,710 (2.0)	8,867 (2.0)	8,732 (1.9)	9,061 (1.9)
도시계획및 주 택 정 비	28,694 (1.3)	4,587 (1.1)	6,212 (1.4)	6,676 (1.5)	6,414 (1.4)	4,805 (1.0)
일 반 행 정	51,444 (2.3)	9,733 (2.2)	10,193 (2.3)	10,200 (2.3)	10,516 (2.3)	10,802 (2.3)
자치구지원	354,173 (15.8)	67,080 (15.4)	67,699 (15.3)	71,027 (15.9)	73,107 (16.0)	75,260 (16.1)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04,913 (9.1)	38,351 (8.8)	40,212 (9.1)	41,141 (9.2)	42,104 (9.2)	43,105 (9.2)
예 비 비	6,535 (0.3)	1,469 (0.3)	1,202 (0.3)	1,306 (0.3)	1,312 (0.3)	1,246 (0.3)
행정운영경비	114,379 (5.1)	22,133 (5.1)	22,497 (5.1)	22,869 (5.1)	23,248 (5.1)	23,632 (5.1)
재 무 활 동	161,398 (7.2)	38,253 (8.8)	32,934 (7.5)	29,811 (6.7)	28,459 (6.2)	31,941 (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4.11), p.38

※ () 안의 수치는 전체 순계규모 대비 분야별 자원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서울시의 조례는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지난 '22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투표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2,714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455명이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나,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정현황에도 명시한 것과 같이 '24년 9월말 기준, 전국 인구의 18.2%, 960만 5,000명의 주민중 0.03%, 2,714명이 참여한 의견수렴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내일이 있는 서울 실현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사회복지분야, 도시안전분야,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등으로 투표결과를 제시하고,
 - “인구정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①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②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③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④도시공간 재구조화(컴팩트 도시 조성) 순으로 투표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게시하였으나, 관련 질문이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주민의견 수렴에 타당한 사안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 법령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현재까지 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은 기후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25년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중 기후예산제 운영개요에 의하면, 시 본청, 사업소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①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②당해연도 10억원 미만 사업중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과 '24년도 기후예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25년도 기후예산 사업은 248개 사업, 3조 1,863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9〉 기후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제출안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48	3,186,323	250	3,283,600	△97,277	△3.0
예 산	237	3,143,621	241	3,234,053	△90,431	△2.8
일 반 회 계	95	771,922	97	804,263	△32,340	△4.0
특 별 회 계	142	2,371,698	144	2,429,790	△58,091	△2.4
기 금	11	42,701	9	49,547	△6,846	△1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7

- 기후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감축사업 1조 9,361억 2,300만원(115개 사업), 배출사업 9,220억 6,000만원(103개 사업), 혼합사업 3,281억 3,800만원(30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실·본부·국별로는 24개 실·본부·국, 248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그러나 기후예산제의 경우, 교통실 32개 사업(9,970억 6,7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7개 사업(4,832억 2,000만원), 기후환경본부 38개 사

업(4,830억 3,000만원), 재난안전실 27개 사업(2,937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기후예산의 70.8%, 2조 2,571억 1,200만원 이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음

- 기후예산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0〉 기후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사업	2025년도 제출안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48	3,186,323	100.0	250	3,283,600	100.0	△97,277	△3.0
감축사업	115	1,936,123	60.8	96	1,758,770	53.6	△177,353	△10.1
배출사업	103	922,060	28.9	111	1,035,822	31.5	△113,762	△11.0
혼합사업	30	328,138	10.3	43	489,008	14.9	△160,869	△32.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7

〈표 2-41〉 실·본부·국별 기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명	2025년도 제출안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48	3,186,323	100	250	3,283,600	100	△ 97,277	△3.0
여 성 가 족 실	7	58,849	1.8	8	54,168	1.6	4,680	8.6
소 방 재 난 본 부	4	10,369	0.3	5	27,676	0.8	△17,306	△62.5
경 제 실	6	37,411	1.2	8	23,094	0.7	14,316	62.0
복 지 실	8	71,545	2.2	11	58,246	1.8	3,298	22.8
교 통 실	32	997,067	31.3	28	979,464	29.8	17,603	1.8
기 후 환 경 본 부	38	483,030	15.2	38	506,654	15.4	△23,624	△4.7
문 화 본 부	9	57,799	1.8	12	75,675	2.3	△17,876	△23.6
관 광 체 육 국	4	30,900	1.0	8	30,784	0.9	115	0.4
평 생 교 육 국	2	2,270	0.1	1	3,756	0.1	△1,485	△39.6
시 민 건 강 국	2	10,094	0.3	6	22,004	0.7	△11,910	△54.1
민 생 노 동 국	4	19,466	0.6	6	44,693	1.4	△25,227	△56.4
미래공간기획관	4	42,289	1.3	2	7,611	0.2	34,678	455.6
디 자 인 정 책 관	2	4,600	0.1	2	3,376	0.1	1,224	36.3
재 난 안 전 실	27	293,795	9.2	29	225,989	6.9	67,805	30.0
주 택 실	16	90,034	2.8	14	172,603	5.3	△82,569	△47.8
균 형 발 전 본 부	6	70,506	2.2	6	47,501	1.4	23,004	48.4
정 원 도 시 국	43	173,967	5.5	29	112,216	3.4	61,750	55.0
물 순 환 안 전 국	6	30,964	1.0	11	42,533	1.3	△11,568	△27.2
도시기반시설본부	7	483,220	15.2	8	564,214	17.2	△80,994	△14.4
서울아리수본부	12	202,302	6.3	9	220,306	6.7	△18,004	△8.2
미 래 한 강 본 부	8	15,401	0.5	7	56,621	1.7	△41,219	△72.8
자치경찰위원회	1	437	-	-	-	-	437	순증
서울역사박물관	-	-	-	1	2,856	0.1	△2,856	순감
미래청년기획관	-	-	-	1	1,550	0	△1,550	순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8

6)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5~2029)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는 기준을 통해 '24년도 예산편성 기준의 보완사항인 예산안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24년도부터 예산안 제출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유재산 가액을 '23년 12월 기준, 138조 9,682억원으로 토지(78조 1,875억원), 건물(9조 472억원), 기타재산(45조 7,976억원), 건설중인 재산(5조 9,359억원)으로 제출하였음

〈표 2-42〉 서울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 천㎡, 억원, %)

구분		수량	면적 (천㎡)	재산가액(억원)	비율(%)
합	계	14,839,286	128,538	1,389,682	100
토 지 (필지)	소 계	58,465	108,198	781,875	56.2
	대	11,513	4,319	118,606	8.5
	전	2,684	1,984	7,173	0.5
	답	1,853	1,152	5,270	0.4
	임 야	4,595	22,055	35,098	2.5
건 물 (동·호)	소 계	71,995	13,203	90,472	6.5
	사 무 소	808	1,725	11,313	0.8
	주 택	68,151	6,894	46,176	3.3
	기 타	3,036	4,584	32,983	2.4
기 타 재 산	소 계	14,708,557	7,137	457,976	33
	입 목 축 (주)	3,931,428	-	2,176	0.2
	공 작 물 (점)	155,736	-	270,717	19.5
	기 계 기 구 (점)	20,773	-	8,414	0.6
	선 박 (척)	43	-	59	0.0
	항 공 기 (대)	4	-	188	0.0
	무 체 재 산 (건)	1,152	-	12	0.0
	유 가 증 권 (주)	10,598,063	-	175,184	12.6
	용 익 물 권 (건)	834	7,137	1,058	0.1
	회 원 권 (건)	524	-	168	0.0
건 설 중 인 재 산 (건)		269	-	59,359	4.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안)첨부서류」 ('24.11), p.204

7)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5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92개 세부사업, 3,653억 2,7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음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과 비교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여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공사 구간이나 공정을 달리하여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3〉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2 0 2 4 년 도 예 산 액	명시이월 요청액 (2024→2025)	2 0 2 5 년 도 예 산 액
총 계		92	(X379,375) 1,167,263	(X127,367) 365,327	(X391,695) 1,245,548
일 반 회 계		35	(X152,911) 309,397	(X10,457) 44,133	(X91,755) 271,150
특 별 회 계		57	(X226,463) 857,866	(X116,909) 321,193	(X299,939) 974,397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4	(X51,400) 233,620	(X11,900) 24,172	(X72,400) 242,121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6	(X-) 141,756	(X-) 35,239	(X-) 92,126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	(X3,574) 23,316	(X3,500) 4,802	(X-) 1,35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7	(X7,965) 197,385	(X65,640) 99,526	(X202,846) 356,57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0	(X46,936) 215,851	(X33,067) 140,420	(X23,520) 229,456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4	(X1,927) 20,736	(X1,436) 2,445	(X1,173) 24,992
	소 방 특 별 회 계	4	(X1,364) 23,747	(X1,364) 14,586	(X-) 24,43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602 ('24.11.19)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홍보기획관

□ 시민청 공간 개편 (사업별설명서 p.41)

- 동 사업은 청사 지하공간을 서울갤러리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2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77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745				
시	설	비		6,233				
◦ 건축공사비				5,936				
◦ 예비비				297				
감	리	비		63				
◦ 건축공사 감리비				63				
시	설	부	대	비	14			
◦ 부대경비 등				14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435
◦ 장비구입비				1,435				

- 관련 법령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서울시는 '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34조 3,838억 8,200만원)의 0.30%, 1,052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시설비에는 예비비(2억 9,70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소액에 해당되나 발생하지 않은 수요까지 고려하여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만일 회계연도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동 소요예산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라 판단하여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일 수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여성가족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별설명서 p.49)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85)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별설명서 p.92)

○ ①**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임신·출산·양육친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양육친화제도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19억 2,000만원이 포함된 19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고,

- ②**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월 30만원)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51억 9,400만원이 포함된 51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③**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임산부를 배우자로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8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되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중인바,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협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 필요시 소요 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특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요청 결과, 재협의로 통보되어 재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 동 사업이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예외를 둘 수 없어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요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 ①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②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③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사업의 추진 근거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자체) (사업별설명서 p.227)

- 동 사업은 위기집대여성을 위한 일시생활과 학업 및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등 8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등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표 2-4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850,460	
공	공	운	영	비	428
	◦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공유재산손해보험료				428
민	간	위	탁	금	850,032
	◦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 426,889천원		426,889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348,730천원		348,730
	▷ 인건비(4명)				
	45,746,500원*4명				
	▷ 운영비		= 41,781천원		41,781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기타운영비 등				
	• 임차료 월1,166,670원*12월				
	▷ 사업비 123,963,000원				
	- 종사자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 78,159천원		78,159
	▷ 종사자 수당 75,959,000원				
	▷ 복지포인트 2,200,000원				
	◦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 423,143천원		423,143
	- 인건비		= 268,466천원		268,455
	▷ 인건비(5명) 53,353,200원*5명				
	▷ 복지포인트 1,700,000원				
	- 운영비		= 29,472천원		29,472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기타운영비 등				
	월2,455,963원*12월				
	- 사업비 125,205,000원				125,205

- 서울시의 매뉴얼에도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편성요청한 임차료(1,400만원)는 적정 예산과목인 사무관리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626)

- 동 사업은 초등학생(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 113,035명)에게 범죄예방 안심장비(휴대용 안심벨)를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9억 400만원 등 9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12
	사무관리비			8
	◦ 사업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			5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3
	기타보상금			904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113,035명(초1:53,543명,초2:59,492명)*8,000원			904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시민안전 보험 가입,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 등은 사회보장 협의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 유사한 사업인 부산시 수영구의 ‘수영동이 안심팔찌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범죄 취약계층 제주형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다

자녀 안전보험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기타보상금**(9억 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동 사안의 경우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절차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사업인지 사회보장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휴대용 안심벨 지급을 위해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설정하였으나,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 안심벨 지원은 반대급부적 경비가 아닌 신청자 모두에게 단순 물품(안심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방침에 게재하고 있어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7〉 기타 보상금의 내용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0	301 일반보전금	14.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아울러 여성가족실 소관 사업중 **안심물품 지원**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 어르신 등에게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발생 신고 시 CCTV 관제센터로 긴급 신고가 요청되나,

- 동 사업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휴대용 안심벨(단가 8,000원)은 위기 발생 시 단순히 경고음 재생 기능만 있는 것으로써 성인보다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성인에게 보급하는 것보다 기능이 저하된 안심벨을 지급하는 것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동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 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8〉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계획 내용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5년 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 113,035명

※초1: 53,543명(예상), 초2: 59,492명

○ 지원수량 : 113,035개

○ 지원내용 : 서울시 캐릭터 활용 휴대용 키링 형태의 방법벨 지원

물품 사진(예시)		주요 기능
 해치	 청룡	· 비상시 버튼 누르면 경고음 발생(100dB이상) · 휴대 가능한 키링형, 충전형

○ 소요예산 : 912,280천원

- 안심벨 구매 : 904,280천원(113,035명 × 8,000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 3백만원, - 홍보물 (포스터 등) 제작 : 5백만원

※ 자료 근거 : 아동담당관-8952 ('24.10.30) “2025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계획”

3) 글로벌도시정책관

□ 외국인 비자 등 제도 개선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1억 9,100만원)와 행사운영비(1억 8,000만원)가 포함된 3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71
사	무	관	리	비
◦ 서울시 산업, 직종별 공급수요 실태조사 ◦ 협의회 회의운영 ◦ 토론회 참석수당 등				191
행 사 운 영 비				180
◦ 토론회 개최 45,000,000원 * 4회 = 180,000천원				180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도 모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중 행사운영비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모두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참석수당 등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토론회 참석수당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외국인 관련 정책 개선 토론회는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 등에 따라 예산안 제출

에 앞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한 바,

-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당시 토론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1억 8,000만원으로 산출하여 심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제출된 예산안에는 지난 10월,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결과보고에 적시한 소요예산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0일간의 서울일주(사업별설명서 p.32)

- 30일간의 서울일주는 서울 거주 외국인 및 서울 거주가 예정된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문화비 지원 등 서울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 사무관리비 2억 8,100만원이 포함된 2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89
사	무	관	리	비
사무관리비				281
◦ 프로그램 행사 운영 인력 인건비 ◦ 문화활동비 ◦ 산업체험비(민간기업 연계, 강연비 등) ◦ 인재교류지원비 ◦ 홍보비(홍보물, 영상 등 제작) ◦ 기타운영비(OT운영, 보험료 등)				108
				63
				48
				24
				23
				15
시	책	추	진	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
◦ 산업체험 인재교류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8

- 동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산업탐방,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사업임에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 보건복지부가 지침중 사회보장협의 제외대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삭제하여 '24년도부터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함에도 동 사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여성가족실 소관 사업중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하여 '24년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원자를 공모·선발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4년 1월 23일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이행한 바 있음
 -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문화비 지원 등 서울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2억 8,100만원)를 편성 요청한 동 사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바 없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는 관련 절차를 이행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고 예산에 대한 편성요청이 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

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사업의 방침서에 명시한 사업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어 동 조항만으로는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서울친화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활동비, 산업체험비, 인재교류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학교 지원 육성** (사업별설명서 p.44)

- 동 사업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서울소재 외국인 학교를 선정하여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교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5,000만원)**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00만원)**가 포함된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4		
사	무	관	리	비	1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1		
공	공	운	영	비	3	
◦ 공제보험료				3		
민	간	경	상	보	조	50
◦ 한국어 교육운영				5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자 체 재 원)				40		
◦ 교육환경개선(시설개보수 등)				4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비상기획관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별설명서 p.41)

- 동 사업은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시민 안보 행사 및 리멤버 1.21 행사를 위하여 행사성경비 2억원을 포함하여 4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74							
사	무	관	리	비	5						
	◦ 시민안보행사 준비				5						
행	사	운	영	비	190						
	◦ 시민안보행사 개최				190						
행	사	실	비	지	원	금	5				
	◦ 시민안보행사 개최				5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203			
	◦ 전후세대 안보견학				203						
민	간	단	체	법	정	운	영	비	보	조	48
	◦ 재향군인회 운영비				48						
민	간	행	사	사	업	보	조	23			
	◦ 6.25전쟁 기념행사				23						

-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①시민 안보 어울림 축제(1억 8,000만원)와 ②리멤버 1.21 행사(2,000만원)로 각각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다수의 행사성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나 편성취지가 동일하여 1개 세부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는 개별 행사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3〉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예시>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4. 7), p.83

○ 아울러 동 사업은 소요예산중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바, ‘인건비 단가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사유로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 되었음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한 산출근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로 다음연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미래청년기획관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업별설명서 p.109)

- 영테크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 거주 청년에게 재무상담 및 금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2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이후 '25년도 예산안에는 상담료 명목의 기타보상금 19억 9,700만원이 포함된 29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시의 지침에는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 바,
 - '21년 8월 수립된 동 사업의 방침에는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요예산을 신규편성한 지난 '22년도에는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22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이후 지난 '23년도와 '24년도에도 상담료 명목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고, '25년도에도 소요예산(29억 4,900만원)중 상담료 명목의 기타보상금(19억 9,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2-54〉 영테크 소요예산 편성 현황 (각 년도)

(단위 : 백만원)

	2 0 2 5 (예 산 안)	2 0 2 4 (최종예산)	2 0 2 3 (최종예산)	2 0 2 2 (최종예산)
계	2,949	2,328	3,149	1,450
기 타 보 상 금	1,997	1,732	1,950	1,000
사 무 관 리 비	492	478	550	450
공 공 운 영 비	156	67	-	-
전 산 개 발 비	253	-	649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	50	-	-

- 사업부서는 상담료를 재무상담이나 금융교육 등을 받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상담인력에게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이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5년도에 신규편성 요청된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 리(Re)테크 운영**의 경우, 사업대상 연령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나, 사업대상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상담료를 지원하는 유사점이 있음에도 '24년 9월,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표 2-55〉 영테크와 리테크 사업비교

(단위 : 백만원)

	영 테 크	리 테 크
사 업 부 서	미래청년기획관	평생교육국
사 업 대 상	19~39세청년	40세 이상 중장년·노년층
사 업 내 용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
운 영 방 식	용역 (민간재테크전문기관)	공공위탁운영
상 담 료 편 성 방 식	기타보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년도 상담료 편성요청액	1,997	373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은 사업대상인 19세~39세 서울 거주 청년이 재무상담을 받은 다음 그 대가를 해당 청년이 상담사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서울시가 상담사에게 대신 지불하는 형태이지만 재무상담을 받은 19세~39세 청년에게 사실상의 편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공모 등 포함) 및 보조사업비 지원,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경비 및 인건비 지원 등도 협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정책실험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현재까지 관련 협의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29억 4,900만원)중 기타보상금(19억 9,700만원)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련 절차를 선행한 이후 편성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경제실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548)

- 동 사업은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억 4,900만원을 포함한 7억 3,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32
사무관리비				549
◦ 시설물 관리 용역비 ◦ 수선예비비				536
				12
공공운영비				182
◦ 공제보험료 ◦ 공공요금				3
				178

- 동 사업은 '24년 12월, 민간위탁 종료 후 시설관리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24년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던 관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나, 사무관리비중 수선예비비(1,29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서는 시설물 하자보증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수요까지 고려하여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세출 재원의 한정성과 예비비의 별를 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동 소요예산중 수선예비비(1,29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회계연도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되어 예비비 명목의 소요재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복지실

□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별설명서 p.176)

- 동 사업은 2025년도 서울 국제 디딤돌 포럼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등 4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5
행사 운영비				400
제4회 국제포럼 개최				400
- 행사 운영 경비(임차료, 회의장 조성비, 온라인 중계비 등)				142
- 홍보비(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21
- 초청비(항공료, 숙박료, 영접 및 수송비)				141
- 기타(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9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 동 사업은 지난 '22년도 제1회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 이후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바, '25년도의 경우 행사운영비를 금년도 최종 예산(2억 5,000만원) 대비 60.0%, 1억 5,000만원 증액 요청한 것임

- 관련 규칙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도 투자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해외연사 등 초청비(항공비, 숙박료, 영접 및 수송비)는 전체 사업예산(4억원)의 28.4%, 1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초청비(6,200만원) 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2-58〉 초청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산 출 내 용						금액
초 청 비	소 계					141
	해 외 연 사	◦기조연사 섭외	106,000,000원	*1명	*1회	106
		◦항공권(비즈니스)	8,500,000원	*1명	*1회	8
		◦항공권(이코노미)	2,800,000원	*6명	*1회	16.8
		◦기조연사 이동	180,000원	*1명	*2회	0.3
		◦해외연사 이동	100,000원	*6명	*2회	1.2
		◦숙박비	230,000원	*7명	*2박	3.2
		◦투어비	1,500,000원	*1회	*1식	1.5
	국 내 연 사	◦발표자	600,000원	*1명	*1회	0.6
		◦좌장,패널	400,000원	*9명	*2회	3.6

- 투자심사의 경우에도 연사 초빙 비용을 절감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소요예산에 대한 조정 없이 초청비 예산(기조연사 1인 초청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초청비 소요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수준인지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사업별설명서 p.329)

- 동 사업은 장애당사자 개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40만원 범위내에서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4억 5,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51
사무관리비				211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용역 - 인건비 - 사업운영비 - 참여자 교육 운영비 - 현장 모니터링비 - 지원기관 운영비 - 예비비(부가세 등)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 자문회의 및 교육 운영비 ◦ 사업홍보비				189
				88
				24
				6
				6
				48
				17
				10
				7
				5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40
◦ 사업참여자 개인예산 지원 - 100명*400,000원*6개월				24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동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되어 사회보장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24년도에는 시범 운영 등을 사유로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안이 제출('24년 11월 1일)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일례로 '22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운영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지원**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전인 '21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이행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방침서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사업 추진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동 사업의 명시적인 추진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857)

- 동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16억 8,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운영방식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24년 10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 소요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 이른바 '공공위탁'으로 판단됨

○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①**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②**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이른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도 명시하고 있는 바,

- 관련 조례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이른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만 있으며 심지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까지도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는 공기관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한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16년 1월부터 시행된 조례와 '23년 7월 개정된 조례에는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 관련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어 '25년도 예산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조례를 정비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를 위탁할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무를 대행하려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 적용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도 중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일자리지원센터 이름에 “시니어”를 붙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노인”의 범

주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니어”는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무로 사료되어 동 사업을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조례에 부합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 안녕 적립금**(사업별설명서 p.904)

- 동 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외부활동을 유도하여 고립·은둔을 완화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10
◦ 사회복지관 서울안녕 적립금				110

- 동 사업은 고립·은둔가구 구성원이 지역전담기관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일정금액(1일 1,000원, 월 최대 30,000원)의 적립금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됨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과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또는 공모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 동 사업의 방침서에도 ‘기참여자는 다른 회계연도에 재참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을 단년도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판단하는데 한계

가 있음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사전절차 이행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참여자에게 적립금을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설정하였으나 관련 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필요하며 사업부서의 방침에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월 25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고립·은둔 국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별설명서 p.914)

○ 동 사업은 2025년도 서울 외로움·고립 대응 국제 포럼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행	사	운	영	비
290				290
◦ 국제포럼 개최				290

○ 동 사업은 신규 행사성 사업에 해당되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사전 행사성 사업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 '25년도에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에 따라 '25년도 국제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이라 하여도 당해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국제포럼에 해외 기조 연사 1인에 대한 초청비와 항공료를 6,9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초청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해외연사 초청비(8,750만원)의 78.9%를 단 1인의 기조연사에게 지출하여야만 국제 행사를 통해 서울시의 위상이 제고되는 절대요인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2〉 초청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산 출 내 용							금액
초 청 비	소 계						87,500
	해 외 연 사	연사비	◦기조연사	60,000천원	*1명	*1식	60,000
			◦일반	500천원	*4명	*1식	2,000
		항공권	◦기조연사	9,000천원	*1명	*1식	9,000
			◦일반	3,000천원	*4명	*1식	12,000
		수송	◦기조/특별	200천원	*1명	*2회	400
			◦일반	100천원	*4명	*2박	800
		숙박	◦호텔숙박비	250천원	*5명	*2박	2,500
	기 타	◦수송지원	800천원	*1명	*1회		8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7418 ('24. 9.25)

- 일례로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서울 국제 디딤돌 포럼(4억 500만원)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해외 연사 초청비 과도로 초빙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조건부 적정 심사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이 편성한 해외 연사

초청비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별설명서 p.928)

- 동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7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편성한 것이나, 소요예산의 세부내역을 검토하면, ‘노인학대(재학대)예방 및 서울형 특화사례관리 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비 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됨

〈표 2-6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6,784
	○ 재가노인지원시설서비스센터 운영(27개소)			6,784
	- 인건비	5,750,954천원		5,750
	- 시간외근무수당	145,686천원		145
	- 복지포인트	39,400천원		39
	- 관리운영비	821,772천원		821
	- 노인학대(재학대)예방 및 서울형 특화사례관리 사업 강화			
	1,000,000원 *27개소	27,000천원		27

- 관련 법령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①인건비, ②사무관리비, ③임차료, ④그 밖에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고,
-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와 구분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비까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 사례로 판단되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돌봄 SOS 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12)

- 동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금 346억 8,100만원이 포함된 347억 6,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으로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4,765
사무관리비				40
		◦ 매뉴얼 제작, 사업설명회, 돌봄매니저 간담회 등		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681
		◦ 돌봄매니저 인건비 - 돌봄매니저 678명 인건비 22,500,000원 * 678명		15,255
		◦ 돌봄SOS 서비스 지원 사업비 - 761,068,760원 * 25개구 = 19,026,719천원		19,026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시범사업) - 100,000,000원*4개구 = 400,000천원		4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
		◦ 돌봄SOS 언론홍보		40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 확대(서비스 이용한도 연간 160만원 → 최대 180만원까지)를 위해 '24년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한 바,

- 보건복지부는 ①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시 서비스간 중복 소지가 없도록 제도간 통합·조정 필요성과 ②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정부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연계 서비스 미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교통실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설명서 p.101)

- 동 사업은 BTO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추진하여 온 민간투자사업으로서 '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24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취소한 것으로,
- 금번 예산안에는 제3자에게 사업제안을 제출하도록 재공고한 후 제3자의 제안이 접수되면 ①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7,000만원)와 ② 제안서를 접수한 제3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협상하고 협약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수수료(7,000만원) 그리고 ③ 실시협약안에 대한 사전검토에 필요한 수수료(1,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7억 7,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772
사	무	관	리 비	772
			◦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재선정 추진 수수료	772
			①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수수료	70
			② 협상 및 협약(안) 작성 수수료	70
			③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수수료	12
			수요예측재조사 수수료	70
			설계 경제성 검토 수수료	20
			공사비 적정성 검토 수수료	530

- 서울시는 '24년 6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 재공고를 통해 제3자의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유찰될 경우에는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사업추진방향을 결정·발표하고,

- '24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재공고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지난 11월 4일, 최종 유찰되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11월 19일,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위례신사선 건설은 서울 동남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동 세부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7억 7,200만원)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고 그 후속절차로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위한 심의를 요청한 현 상황에서는 소요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더라도 불용될 수밖에 없어 사업비(7억 7,200만원)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사업별설명서 p.188)

○ 동 사업은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홍대입구역(2호선) 9번 출입구 반대 측에 출입구를 신설하고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출자금** 1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바,

- 사업수행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전체 설계비(3억 6,200만원) 중 서울시 부담분(50%)을 출자하고자 1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81
	출	자	금	181
	◦ 설계용역비			181

- 관련 법령은 ①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비를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출자를 하려면 출자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동 사업의 경우, ① 서울시 분담분(50%)과 서울교통공사 분담분(50%)을 포함한 총사업비(88억 9,600만원)가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난 '24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② 제 326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24. 9)을 얻은 사실이 있어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법정 사전절차(투자심사, 출자동의)가 이행된 사안으로 검토됨
- 다만, 서울시의 기준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용역비(3억 6,200만원) 중 서울시 분담분(1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소요예산이 적정 규모로 산정되었다고 확신하는 데 한계가 있는 편성사례로 사료됨

□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323)

- 동 사업은 교통불편지역의 거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영 하려는 것으로서 14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41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260
자율주행버스 운행 (2억 1,000만원 × 6대)				1,260
시 설 비				150
자율주행인프라 구축 (5,000만원 × 3개 지역)				150

- 소요예산(14억 1,000만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12억 6,000만원)의 경우, 자치구(3개소)마다 자율주행차량 2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것이며,
 - 시설비(1억 5,000만원)의 경우, 서울시가 총 3개 노선(자치구마다 1개 노선)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교통신호를 개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2억 6,000만원)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별설명서 p.326)

- 동 사업은 '24년 8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2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미설치 정류소(13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기 위해 소요예산(1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04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104
◦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800만원 × 13대)				104

- 동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구를 지원함으로써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것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률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23년도에 재정사업인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확대**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보조하고, '24년 6월, '23년도중 기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

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25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가진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폐지되었음에도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한 사례로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점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근거(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은 관내 자치구(25개소) 중 2개소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가 '23년도에 기 추진한 재정사업은 설치비의 50%를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5년도에는 폐지된 바,
- 시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25년도에 설치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2개 자치구와 과거 재정사업을 통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다가 '25년도에는 사업폐지로 인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기후 환경본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별설명서 p.184)

- 동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축물(34개소)에 대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3,079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3,079
◦ 어린이집, 경로당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3,079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포함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려면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해당 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예산안의 경우, 전액 시비(자체재원)으로 지방보조금(30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해당 시비(30억 7,900만원)에 대응되는 국비(55억 5,000만원)가 '24년도중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어 2차례의 간주처리('24. 8, '24.10)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24년 10월, 자치구로 교부하였다는 점 때문에 심의 제외대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사안으로 확인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과 같이 직전연도(2024년도)에 국비가 교부된 이후 당해연도(2025년도)에는 자체재원만을 편성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할 경우에는 동 사업도 자체재원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법정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례일 수 있어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절차 이행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교육센터 재활용 교육 지원 (사업별설명서 p.403)

- 동 사업은 '24년 8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하여 재활용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2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0
◦ 환경교육센터 재활용 교육 지원				20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소요예산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중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만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시설에 대해 운영비의 신규편성이나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관내에서 12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환경 교육센터(13개소) 중 중랑구가 직영하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만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실상 이미 자치구가 운영 중인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에 해당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음

○ 둘째, 동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시의 재정사업과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 이례적인 편성사례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는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 간 기준과 절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기후환경본부가 '23년 10월,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자치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자치구 소관 센터의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부적정”으로 결정하여 '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동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자치구 직영시설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시 “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서울시의 기존 재정사업과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이 구입하려는 장비는 사고위험이 있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만한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는 동 시민참여예산사업이 분쇄기, 사출기, 금형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는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위험하므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직영시설에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낙관하고 동 소요예산(2,000만원)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별설명서 p.504)

○ 동 사업은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소요예산(10억 3,700만원) 중 행사운영비의 경우, 노조창립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예산(5,000만원)과 동일한 규모인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은 기 추진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통해 '24년도 중 '23년도에 기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25년도 예산편성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기 추진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등급이 “매우 미흡”임에도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행사운영비 (5,000만원)를 금년도 최종예산(5,000만원)과 동일규모로 편성요청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추진성과와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편성사례를 양산한 것으로 사료됨

〈표 2-71〉 소요예산 편성현황 비교 (2025~2023)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최종예산) ^{주1)}	2023년도 (최종예산) ^{주1)}
계	1,037	1,017	1,927
사 무 관 리 비	◦ 노사문제 상담수수료 1	◦ 노사문제 상담수수료 1	◦ 노사문제 상담수수료 1
공 공 운 영 비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29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29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28
행 사 운 영 비	◦ 노조창립행사 지원 50	◦ 노조창립행사 지원 50	◦ 노조창립행사 지원 5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 노사관계 업무추진 3	◦ 노사관계 업무추진 3	◦ 노사관계 업무추진 3
기 타 보 상 금	◦ 환경공무원 작업수칙 위반 신고포상금 2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명절차려품 지원 휴양소 지원 등 913	◦ 명절차려품 지원 휴양소 지원 등 913	◦ 명절차려품 지원 휴양소 지원 등 1,643 ◦ 환경공무원 사진 전시회 등 운영 200
시 설 비	◦ 청운복지회관 시설개선 공사 20	◦ 청운복지회관 옥상 방수 19	-

※ 주1) 추경을 통해 증감조정된 내역이 없어 최종예산과 본예산이 동일함

- 사업부서로서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보다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직전년도에도 사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었으며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이미 제출한 사안에 해당되는 바,
- 직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진한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유지라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어 성과관리 개선계획이 예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을 뿐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한

사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5,000만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문화본부

□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사업별설명서 p.66)

- 동 사업은 가스열펌프(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2,600만원), 시설 철거 및 조경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22억 3,600만원)등을 포함하여 38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881			
사	무	관	리	비	1,314		
◦ 운영대행용역				1,306			
◦ 위원회 운영(자문, 심의)				8			
공	공	운	영	비	5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5			
민	간	위	탁	금	166		
◦ 인건비(기본급, 4대보험, 수당 등), 운영비, 사업비				166			
시	설			비	2,236		
◦ 철거 및 조경공사 설계용역비				119			
◦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조경공사				1,971			
◦ 매장유산발굴조사				100			
◦ 시설물 유지보수				45			
감	리			비	129		
◦ 철거 및 조경 감리비				129			
시	설	부	대	비	5		
◦ 설계자문 등 부대경비				5			
민	간	위	탁	사	업	비	26
◦ 시설물 유지보수(GHP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26			

- 지난 '22년 6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도록 하여,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

고자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4년 6월, 서울시가 수립한 방침에 따르면 '25년 9월부터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25년도 예산 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2,600만원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중 철거하는 것이 소요예산의 규모를 떠나 적기에 적정 편성요청된 사례인지 재고할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 '24년 10월, 저감장치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준법 의지가 있어도 연내 법령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안내한 바,
 -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에 대해 '24년 12월 말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폐쇄)을 수립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심지어 환경부가 예시로 제시한 방안에는 “GHP 폐쇄”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비록 소액(2,600만원)이지만 회계연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후 철거하기보다는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안내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별설명서 p.453)

- 동 사업은 삼일절, 광복절,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8억 5,000만원을 포함한 29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축소된 행사규모를 복구하고자 지난 '24년 예산심사시 동 사업에 행사성경비(23억 3,000만원)를 편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이행한 바, 투자심사 결과 “다중운집을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구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건부 적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표 2-7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946
사	무	관	리 비	51
	◦ 타종행사 청소, 사무실 운영 등			34
	◦ 행사차출 지급 경비			17
공	공	운	영 비	3
	◦ 통신요금 납부 등			2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0.8
행	사	운	영 비	2,850
	◦ 타종행사(삼일절, 광복절, 재야의 종)			119
	-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개최			55
	-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 개최			490
	- 재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2,305
시	설			42
	◦ 보신각터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			20
	◦ 보신각터 정밀안전점검			22

- 관련 규칙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심사액의 12.2% 증가하여 재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동 사업의 세부 행사내역중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의 경우에는 '24년도 소요예산(3,500만원)보다 1,300.0%(4억 5,500만원)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당초 3개의 행사(삼일절, 광복절, 재야의 종)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투자심사를 이행한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동 편성 사례처럼 개별 3개 행사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재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4〉 개별 타종 행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행 사 명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2,303	2,850	546	23.7
	삼일절 기념 타종행사	35	55	20	57.1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	35	490	455	1,300.0
	재야의 종 타종행사	2,233	2,305	72	3.2

※ 자료근거 : 문화본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55

□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사업별설명서 p.737)

- 동 사업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라 기존 난지 창작스튜디오를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전하고자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대한 시설비 2억 5,400만원을 포함한 2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57
사	무	관	리	비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
시	설			비
	◦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117
	◦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설계용역			137

○ 서울시는 지난 '19년도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규정도 사전검토의견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 더욱이 서울시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한 소요예산(1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 하기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여 “조건부 적정”을 통보받아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의 기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대상이 아닌 “심사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설계비 1억원 이상인 동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아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동 사업의 설계용역비(1억 3,700만원)의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관광체육국

□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p.147)

- 동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관광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5,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754	
민	간	경	상	사업보조	754
				◦ 관광취약계층 국내여행 지원	663
				◦ 관리운영비 등(자문수당, 인건비, 홍보비 등)	91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협의 제외 대상으로 “협의제도 시행 이전인 ’13년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이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협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열거하는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계속성이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협의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67)

- 동 사업은 글로벌 미식관광 도시 브랜딩을 위한 미식 행사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5억원이 포함된 5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96
사	무	관	리	비
○ 민관협력 미식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6
행	사	운	영	비
○ 국제 미식행사 유치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500

-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조례에도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지난 '24년 9월 25일, 2025 국제 미식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한식진흥원, 주최사와 삼자협약을 체결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억원을 납부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지난 '24년도의 경우, 동일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23년 8월,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으로 인해 예산외 의무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외 의무부담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조례는 ①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만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 아니라 ②예산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인해 '25년도 예산이 의무적으로 투입된다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사무”에 해당되며 이는 예산외 의무부담이기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가 타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5억원의 예산외 의무부담을 발생시킨 동 사안은 관련 조례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으나,

- 동 소요예산의 경우에는 금번 제327회 정례회에 협약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요예산중 **행사운영비(5억원)**는 전액 삭감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로 정한 절차를 이행한 이후 필요시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별설명서 p.218)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주최하여 ‘2025 서울 익스트림스포츠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신설하여 총 6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00	
사	무	관	리	비	200
◦ 올림픽 이스포츠 대회 유치				200	
- IOC 제출용 유치계획서 제작(국문, 영문)				100	
- 국내 실사 대비 설명자료 제작				50	
- 사전타당성 조사				5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400	
◦ 제2회 국제 이스포츠 포럼 진행				110	
- 포럼 기획 및 진행				7	
- 행사장 임차				30	
- 포럼 연사 초청 및 행사 운영				70	
- 포럼 홍보물 제작				3	
◦ 2025 서울 익스트림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290	
- 경기장 조성비				88	
- 초청비(국제선수, 심사위원 등)				75	
- 프로그램 운영비(체험 및 초청공연 등)				36	
- 인건비(안전 및 경호, 운영 등)				26	
- 홍보비(물품 및 인쇄물 등)				17	
- 기타 운영비(의료비, 보험료 등)				18	
- 기획 및 진행비				29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세부내역중 ‘서울 익스트림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계획한 것임에도 동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인 행사운영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수정하는 대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신규 행사로 행사운영비로 수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

성에 앞서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 사업부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2025 서울 익스트림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는 사실상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임에도 소요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행사운영비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를 회피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을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하여 편성함으로써 관련된 사전심사(투자심사)나 절차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껏 우회한 편성 사례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과 목으로 수정하고 관련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S-리그) 운영 (사업별설명서 p.276)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체육시설과 연계한 배드민턴 리그를 운영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S-리그) 운영				101,00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01,000
◦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 운영				101,000
- 종목 운영비 (99,000,000원×1종목)				99,000
-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1,400,000원×1종목)				1,400
- 기타운영비(보험, 안전관리 등)				600

-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사업의 운영방법을 “**서울시민리그(S-리그)**내 배드민턴 리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 이미 다른 세부사업인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이 축구를 포함한 10개 종목에 대해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고 있어 배드민턴 리그 1종목을 별도 세부사업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리그(S-리그) 운영**으로 편성하고, 실제 운영방법은 기존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에 사실상 추가하는 것으로
- 기존 계속사업인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에는 배드민턴이 포함되지 않아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배드민턴 리그 운영을 통해 배드민턴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되나,
-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요청하는 것임에도 기존 계속사업과 동일하게 서울시체육회를 통해 종목 리그별로 지원되는 예산 지원방법에 배드민턴을 추가하는 사업운영 방법은 결국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사업내용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됨

〈표 2-8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1,060,00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 종목운영비 ※ 정식종목 운영(10종목) (99,000,000원×10종목)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 - 기타운영비(보험, 안전관리 등)				1,060,000
				1,060,000
				1,060,000
				990,000
				64,000
				6,000

-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에 우선하고,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의 계획에도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나, 결국 예산의 최종 수혜대상은 배드민턴 리그 참여자나 해당 단체로 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더욱이 동 편성사례를 용인할 경우, 향후 시민참여예산이 특정 단체나 활동에 대해 별도의 예산 몫을 확정해 주는 제도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기 보다 오히려 유사성이 높은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사업내용에 추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2)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5)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8)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1)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별설명서 p.5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58)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9)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4)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전출금**과 관련 조례 등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을 합하여 총 3조 8,444억 5,4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임

〈표 2-81〉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명	'25년도 예 산 안	'24년도 본 예 산	'2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최종예산대비)
합	계	3,844,454	3,853,467	3,940,749	△96,294
법정전출금	소 계	3,828,452	3,835,963	3,923,245	△94,792
	지 방 세 전 출	1,760,384	1,757,043	1,840,453	△80,069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46,269	257,277	263,847	△17,578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817,977	1,811,356	1,808,656	9,320
	고 등 학 교 무 상 교 육 경 비 부 담 금 전 출	-	8,255	8,255	△8,255
	지 방 이 양 사 무 지 원	43	43	43	-
	학 교 용 지 매 입 비 부 담	3,778	1,987	1,987	1,790
비법정전출금	교 육 경 비 보 조 (조 례 상 전 출 금)	16,001	17,504	17,504	△1,502

□ 법정전출금

○ 서울시가 편성한 '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세 전출** 등 6개 사업, 3조 8,284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 총액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8,404억 5,300만원) 보다 △800억 6,900만원 감소한 1조 7,603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지방세 전출금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6월,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834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교육청에 전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되는 바,

■ 지방세 전출금은 서울시교육청의 '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10조 8,102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을 이 전받는 기관이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을 계획하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전출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2,638억 4,700만원) 보다 △175억 7,800만원 감소한 2,462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전출금의 근거 규정은 '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재는 '25년도 전출금을 편성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률의 개정여부에 따라 필요시 결정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1조 8,086억 5,600만원)보다 93억 2,000만원 증가한 1조 8,179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전출**은 지난 '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의 4.5%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25%, 자치구 2.25%)가 부담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법률에 따른 규정이 '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바, '25년도에는 동 전출금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에 따라 회계연도중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사무 지원**은 지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한 지방이양사무지원 예산을 '22년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분 4,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빛초에 대한 학교용지매입 경비중 1/2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37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1)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교육경비 보조금의 10% 이내)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초·중·고 입학준비금 155억 100만원,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60억 100만원(보통세의 0.08% 수준)을 편성한 것임

-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의 경우, 국가, 서울시, 교육청이 재원을 50:25:25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4년 1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금을 10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5억원을 대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24년 10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금을 당초 10억원 보다 △2억 5,000만원 감액된 7억 5,000만원으로 변경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의 예산을 매칭비율에 맞게 5억원에서 3억 7,500만원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82〉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내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안) ㉠	2024 예산 ㉡	증 감 ㉠-㉡	추진대상
계		16,001	17,504	△1,502	
일반교육경비		16,001	15,914	88	
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5,501	15,914	△412	189,000명
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500	-	500	10개교
특별교육경비		-	1,590	△1,590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9)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2,192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3〉 202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원)

학교급별		변 동 내 역 (' 2 4 년 도 → ' 2 5 년 도)								
		급 식 인 원			급 식 일 수			급 식 단 가 주 1)		
		' 2 5	' 2 4	증 감	'25	'24	증감	' 2 5	' 2 4	증감
계		772,392	786,463	△14,071						
초	공 립	330,623	355,583	△24,960	192	192	-	4,292	4,044	248
	국사립	22,999	23,212	△213	192	192	-	6,262	5,890	372
중	공 립	153,880	149,746	4,134	180	180	-	4,668	4,418	250
	국사립	52,635	51,421	1,214	180	180	-	6,915	6,593	322
고	공 립	71,333	68,845	2,488	173	173	-	4,875	4,615	260
	국사립	136,384	133,199	3,185	173	173	-	7,175	6,843	332
특수	공 립	1,856	1,795	61	192	192	-	4,890	4,634	256
	국사립	2,682	2,662	20	192	192	-	6,860	6,480	38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290~291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14447('24. 11. 7)

주1) 서울시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단가는 서울시교육청 급식 단가에서 Non-GMO 단가가 제외됨
 - Non-GMO 단가 : (초, 특) 52원, (중) 79원, (고) 81원

- 동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2,104억 1,500만원)보다 88억 8,3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학교급식 인원은 금년도 786,463명 보다 △14,071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식단가가 인상(식품비 5.2%, 관리비 3.5%, 인건비 2.0%)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4)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238억 7,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60,108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795억 8,100만원중 기관 부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30%분, 238억 7,4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237억 4,300만원 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급식단가 인상(식품비 5.2%, 관리비 3.5%, 인건비 2.0%)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4〉 2025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원)

학 교 급 별	변 동 내 역 (' 2 4 년 도 → ' 2 5 년 도)								
	급 식 인 원			급 식 일 수			급 식 단 가		
	' 2 5	' 2 4	증 감	'25	'24	증감	' 2 5	' 2 4	증 감
계	60,108	61,915	△1,807						
공 립	13,569	14,138	△569	182	182	-	4,476	4,264	212
사 립	46,539	47,777	△1,238	217	217	-	6,787	6,578	209

※ 공립유치원 △569명 감소, 급식단가 212원 증가

※ 사립유치원 △1,238명 감소, 급식단가 209원 증가

※ 자료근거 :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295

□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p.61)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78)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사업내용중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에 사무관리비 123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의 경우에도 **서울형 멘토링 운영**에 사무관리비 45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

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인 기본경비에 포함시키고 있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가 적정 예산과목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이미 수년간 편성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관리비를 지출하였으며 지난 '24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를 신설한 바 있어 사업부서가 편성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여전히 청소, 검침, 경비용역 등에 지출하는 용도로 적시하고 있어 동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에 편성한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사무관리비 123억 1,000만원)과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업에 편성한 **서울형 멘토링 운영**(사무관리비 45억 8,800만원)은 해당 세부사업의 실질적인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 세출예산을 기능별이나 성질별로 분류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닌 행정비용이나 물건비(운영비)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재정통계 또한 사실과 다르게 집계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은 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123억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편성 사례인지 현 시점에서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별설명서 p.113)

- 동 사업은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4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사무관리비**(8,000만원)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8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427
사	무	관	리 비	216
◦ 시설 임차료 ◦ 종합계획수립 ◦ 평가위원 수당 등				135 80 1
공	공	운	영 비	0.3
◦ 공유재산손해보험료				0.3
민	간	위	탁 금	1,210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1,210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전절차(학술용역 심사)까지 이행하였음에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에 해당하고, '24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를 신설한 바 있어 사업부서는 편성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관련 훈령인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청소, 점검, 경비용역 등에 지출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어

-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 시민건강국

□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별설명서 p.364)

○ 동 사업은 서울여성가족재단을 통해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4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출연기관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실제로 지난 '23년도 본예산안중 **안심소득 운영** 관련 예산(100억 1,000만원)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①재단 출연금 편성 근거 미비, ②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통계목) 부재 등으로 '24년도에는 출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편성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150억원)을 신설한 사례가 있고,

■ '25년도에는 디딤돌소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편성하여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지원**으로 소요예산 110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더욱이 시민건강국 소관 저출산 대책인 ① **35세 이상 임신부의료비 지원**, ②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도 사회보장급여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편성하여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바,

-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만 금년도에 이어 '25년도 예산안에도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 요청한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사업추진 주체를 서울시로 변경하고, 적정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별설명서 p.536)

- 동 사업은 배회나 실종경험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등록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료와 통신료를 지원하고자 단말기 사용 지원료 4억 2,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12년 3월, U-서울안전서비스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단말기 사용 지원료)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디지털도시국에서 시민건강국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임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련 지침에는 협의제도가 시행된 '13년 1월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은 협의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동 운영지침은 협의제도 시행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협의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단말기 사용 지원료 4억 2,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지난 '12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단말기 구매나 대여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통신비의 경우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21년도부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바,

- 행정안전부가 지난 '24년도 기준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검침, 경비용역 등의 일반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를 신설한 바 있고,
- 동 사업의 예산 집행방식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대여료와 통신비가 포함된 단말기 사용 지원료를 일괄 납부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상적, 소모적 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용인 기본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실제로는 사업비 성격으로 지출되어도 사무관리비는 결국 행정비용이나 물건비(운영비)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더욱이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의 경우,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여 사업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가족실 소관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의 경우에도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이 참여자의 위치기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여 현재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가 적정 예산과목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4) 민생노동국

□ 통폐합에 따른 소요예산 정리 필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p.87)
- 서울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92)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도심권,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금 11억 1,600만원과 '25년 9월 말 운영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으로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66			
민	간	위	탁	금	1,116		
◦ 도심권, 동남권 센터 운영				1,116			
- 인건비(12명)				783			
32,630,375원 * 12개월 * 2개소							
- 관리운영비				133			
5,568,250원 * 12개월 2개소							
- 사업비				199			
민	간	위	탁	사	업	비	50
◦ 도심권, 동남권 센터 시설 원상복구비				50			

- 사업별설명서는 도심권, 동남권 센터는 '25년 9월 30일부로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난 '23년 9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의안에도 권리보호센터 1개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개소 각각의 위탁기간 만료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 및 종사자 고용승계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대해 도심권, 동남권 센터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12개월분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도심권, 동남권 센터의 경우에는 '25년 9월 30일, 9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의 경우, 2025년도 추진일정중 '25년 9월, “도심권/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재배치,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재하고 있어 통폐합 이후 도심권/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이전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7〉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463	
신규위탁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025.01~2025.12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1회)
도심권/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통합	2025.09~2025.09	-	도심권/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예산 및 인력 재배치,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집행 정산	2025.01~2026.01	4,463	분기별 사업비 교부, 정산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95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의 변경이 확실시되는 사업으로 12개월분 운영비를 기존처럼 편성하기 보다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9개월분의 소요예산만을 편성하고,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기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인력에 대한 잔여기간(3개월)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전용하기 보다는 이미 예정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의회로부터 미리 예산으로 의결받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별설명서 p.396)

- 동 사업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

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성요청된 '25년도 소요예산 60억원은 ①국고보조금 18억원, ② 정부자금채 24억원, ③시비 18억원으로 구성된 것임

〈표 2-8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x1,800) (채2,400) 6,00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x1,800) (채2,400) 6,000
◦ 설계비				4,500
◦ 감리비 등				1,5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채무관리서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작성 내용으로도 “당해연도 지방채(지방채 증권, 차입금) 발행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난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 편성된 정부자금채를 회계연도중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제표 첨부서류중 ①채무관리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중 ② 지방채 발행 보고서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사례가 있음
- 동 정부자금채 발행 건은 '2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에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확정 이후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누락되지 않고 지방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표시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최근 제출한 '24년도 예산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별설명서에는 당해연도 예산액의 재원중 “국비(x)”와, “소방안전교부세(소)”만을 별도 표기하여 작성하였으나,
 - 금번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에는 “국비(x)”, “소방안전교부세(소)” 그리고 “지방채(채)”를 구분하여 표기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기준과 동일하게 “국비(x)”와 “소방안전교부세(소)”만을 별도 표기하여 제출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안 작성시에도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재원을 구분하여 작성·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9〉 202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 행 액	예 산 과 목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12,400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400	정 부 자 금 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000	모 집 공 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		24,000	모 집 공 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		30,000	모 집 공 채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0,000	모 집 공 채
	양재대로 구조개선		25,000	모 집 공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차환		280,000	모 집 공 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안」('24.11), p.144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

15) 디지털도시국

□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별설명서 p.237)

-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6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소요예산(6억 7,400만원) 중 전산개발비의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사용권)를 구매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674
사무관리비				10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 ◦ 전문가 자문수당 및 자료제작				6
				3
공공운영비				583
◦ 도시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시데이터 센서 운영 및 유지관리 ◦ 이동형 센서 설치				201
				331
				51
전산개발비				80
◦ 시계열DB서버 SW 라이선스 구매				80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세출과목 중 전산개발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만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구입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비(8,000만원)를 “개발비”와 “감리비”만 편성되어야 할 전산개발비로 잘못 편성요청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6) 미래공간기획관

□ 편 스테이션 및 공공유희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사업별설명서 p.167)

- 동 사업은 지하철역사 및 공원 등 공공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적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편성요청된 시설비(25억원) 중에는 잠실한강공원(잠실선착장) 인근과 뚝섬한강공원(뚝섬선착장 인근)에 러너·자전거 스테이션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18억원이 포함된 것임

〈표 2-9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2,550
사	무	관	리	비
○ 편 스테이션 신규 발굴 및 기획 (2,000만원 × 2건)				40
○ 편 스테이션 혁신 콘텐츠 발굴 및 기획 (1,000만원)				10
시	설	비		2,500
○ 지하철 역사 런베이스 조성 (5,000만원 × 10개소)				500
○ 편 스테이션 연계 샤워시설 추가설치 (2억원 × 1개소)				200
○ 러너·자전거 스테이션 설계 및 조성(잠실, 뚝섬) (9억원 × 2개소)				1,800

- 서울시의 조례는 기준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잠실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 조성하려는 러너·자전거 스테이션은 기준가격(18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업부서는 예산안 제출('24.11. 1) 이후인 지

난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5일 심의를 받게 될 예정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이 러너·자전거 스테이션의 설계 및 조성을 위해 편성요청한 시설비(18억원)의 승인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 디자인정책관

□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업별설명서 p.91)

- 동 사업은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마스코트, 굿즈 등을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00	
사	무	관	리	비	600
◦ 제안서평가 참석수당				1.6	
◦ 전문가 자문 수당				2.4	
◦ 디자인 개발				216	
◦ 디자인 구현				380	

- 동 사업이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의 통합 ‘마스코트’를 개발하여 지하철, 버스, 따릉이, 리버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 및 로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나,
- '25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다른 BI(Brand Identity) 개발 사례와 비교하면, 경제실 소관 ①**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의 경우, 브랜드 개발 용역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②**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브랜드BI 공모전 등 1억 8,000만원, 복지실 소관 ③**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은 어울림플라자 BI 등 디자인 개발 용역 3,500만 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 BI개발을 통한 정책효과나 사업대상집단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이 적정한 규모인지 재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93〉 2025년도 예산안 중 BI 개발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25년도 예산안	사업내용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50	서울영화센터 브랜드 개발 용역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35	어울림플라자 BI 등 디자인개발 용역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80	브랜드BI 공모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의견수렴 등

※ 자료근거 : 2025년도 예산(안) p.455, p.510, p.1378

- 아울러 교통실 소관 **기후동행카드 운영**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확대 및 K패스 통합 방안, 국내외 교통패스 연계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패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는 디자인정책관 소관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업이 편성요청하여 추진하려는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편성 시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4〉 기후동행카드 홍보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25년도 예산안	사업내용
계		2,850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무관리비	55	외국인(영,일,중) 안내문 제작 알림톡 발송
"	연구용역비	250	기후동행카드 확대 및 K패스 통합방안, 국내외 교통패스 연계 추진전략 마련
교통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05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정책 홍보

※ 자료근거 : 교통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4, p.49

18) 건설기술정책관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43)

- 동 사업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25년도에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0
연	구	용	역	비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1차분)				200

- 서울시의 기준은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난 10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받았으나, 보완하도록 통보받아, 사업부서가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당초 총 사업비 3억원 보다 △3,800만원 감액된 2억 6,200만원으로 조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사업부서가 계획한 총사업비 3억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학술용역심의의 취지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학술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이나 심사에 대한 사전심사결과가 예산안과 연동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9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x-) 300	(x-)	(x-)	(x-) 200	(x-) 100
연구용역비	(x-) 300	(x-)	(x-)	(x-) 200	(x-) 100

※ 자료근거 :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5

19) 재난안전실

□ 자본형성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사례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사업별설명서 p.489)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사업별설명서 p.493)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 (사업별설명서 p.615)

- ①**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1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표 2-9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15,114
공	공	운	영	비
◦ 일반운영비(공제가입비)				0.1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5,114
◦ 직접관리비				14,444
- 인건비				6,585
- 경비				7,689
- 유형자산취득비				168
◦ 간접관리비				669

- ②**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 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3억 4,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표 2-9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20,350
공	공	운	영	비
○ 공유재산 공제비				1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0,348
○ 위탁사업비				19,565
- 인건비				11,723
- 경비				7,283
- 유형자산취득비				557
○ 간접관리비				783

- ③**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은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 및 상시점검 시행 등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3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				5,346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5,346
○ 위탁사업비				5,161
- 인건비				2,958
- 수선유지비				532
- 수탁자산취득비				457
- 일반운영비 등 경비				1,212
○ 간접관리비				184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①**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의 경우,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중 9,000만원 상당의 중형화물차, 4,000만원 상당의 소형화물차를 취득하기 위한 유형자산취득비(1억 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②**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의 경우에도 노면청소차 등을 취득하기 위한 유형자산취득비(5억 5,700만원)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포함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③**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의 경우에도 차량 취득 등을 위하여 수탁자산취득비(4억 5,7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포함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동 사업내용은 자본형성적 경비임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주택실

□ 법정 사전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업

-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7)
-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1)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과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노후·쇠퇴하는 저층주거지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의 경우, 마중물사업 중 새장골주차장 복합화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35억 6,200만원(전액 시비)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표 2-10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562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3,562
◦ 새장골주차장 복합화사업				3,562

-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의 경우, 마중물사업 중 자투리공간 및 내집 앞 숲 조성사업의 설계비(2억 1,700만원)와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사업의 설계비(1,10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2,800만원(전액 시비)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28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228
◦ 자투리공간 및 내집 앞 숲 조성사업				217
◦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사업				11

○ 관련 법률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포함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금번 예산안을 통해 전액 시비(자체재원)로 지방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중에는 국비가 각각 100억원씩 포함되어 있고 '23회계연도까지 국비 전액이 기 교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 제외대상인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심의를 생략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과 같이 직전연도까지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 “현재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할 경우에는 동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례일 수 있어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생략한 현재의 편성방식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심 집수리 보조지원** (사업별설명서 p.312)

○ 동 사업은 취약가구 거주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해 집수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7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3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 지원수당과 심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7,727
사 무 관 리 비				401
◦ 전문가 지원수당 지급 (22만원 × 900건 × 2회)				396
◦ 심의 참석수당 지급 (18만원 × 8명 × 4회)				5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7,326
◦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 집수리 비용 지원 (814만원 × 900건)				7,326

○ 동 사업의 경우,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총 319억 5,000만원 (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3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한 결과 ① 공종별 단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②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 투자심사를 이행한 시점('23.10.20)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까지 ① 지원공종별로 단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는 '24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 중 일부(②)를 이행하고, '25년 1월까지는 조건 전부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①)하는 중으로 확인되는 바,
 - 투자심사 결과 중 “조건부 추진”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24년도 사업추진 시는 물론 '25년도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현 시점까지도 관련 지침의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을 적기에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즉 경상사업 성격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산과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투자사업 성격의 보조금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73억 2,600만원)의 경우, 일반투자사업으로서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사업 성격의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사업 성격의 보조금이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편성된 예산편성기준 위반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요청한 **민간경상사업보조**(73억 2,600만원)와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4억 100만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약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②)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침수립 없이 '24년도 사업이 기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침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편성 사례라는 점에서 '25년도 사업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추진한다는 점이 담보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 소요예산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부적절하게 설정된 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운영경비의 부적절한 편성사례

-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40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354)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소관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는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 1,027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2,400만원) 중에는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에 대해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 2,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됨

〈표 2-10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102,725
사	무	관	리	비
○ 청년주택사업 추진 관련 자문수당				24
-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자문수당				20
-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수당				4
○ 자문회의 운영비				0 ^{주1)}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2,700
○ 입주자 주거비 지원				102,700

※ 주1) 자문회의 운영비 80만원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면 법령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는 “청년주택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도 추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는 예산안을 통해 위원회 자문수당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부터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실 건축기획과 소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1,100만원), 위원회 운영비(100만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600만원), 위원회 업무추진비(800만원)를 포함한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표 2-10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26
사 무 관 리 비				18
◦ 위원회 참석수당 (25만원 × 11명 × 4회)				11
◦ 위원회 운영비 (138만원)				1
◦ 전문가 자문단 운영 (20만원 × 8명 × 4회)				6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8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8

- 위원회 참석수당(1,100만원)의 경우, 서울시의 규칙이 참석수당을 하루당 최대 20만원(기본료 15만원, 초과 5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최대 단가(20만원)를 초과하여 하루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

해 편성요청된 것으로서 서울시의 자치법규(규칙)를 위반한 사안으로 검토 됨

- 사업부서는 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참석수당의 단가(25만원)에는 서울시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참석수당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서울시의 규칙이 참석수당과 사전검토수당을 각각 호를 나누어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예산안에는 이를 참석수당으로 일괄하여 편성하는 것 또한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의 경우, 위원회 자문수당(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의 경우, 참석수당(1,100만원) 중 최대 단가(20만원)를 초과하는 220만원은 감액조정 하고, 사전검토수당의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확인한 이후 참석수당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사업별설명서 p.439)

○ 동 사업은 공공운영비 1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소요예산(1억 4,700만원) 중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관리비(5,700만원), 콜센터 운영비(5,20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1,600만원), 운영서버 이관비용(2,200만원)을 포함한 것임

〈표 2-10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47
공	공	운	영 비	147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57
		◦ 콜센터 운영		52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6
		◦ <u>운영서버 이관 비용</u>		22

○ **운영서버 이관 비용**(2,200만원)의 경우, 노후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운영서버를 신규 서버로 이관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유지관리가 아닌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바,

- 서울시의 규칙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2,200만원)부터 편성요청한 것이며,
- 예산안 제출('24.11. 1)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 지난 11월 22일에서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예산편성에 앞서 적기에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함으로써 서울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1) 도시공간본부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사업별설명서 p.77)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의 경우에는 경관지구의 운영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자 지난 '24년 3월에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된 기술용역을 시행하기 전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을 통해 소요재원(6,500만원)으로 '24년 6월,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수 용역비(6,500만원)뿐만 아니라 예산으로 성립되지도 않은 잔여분(2차수 용역비 2억원)까지 '25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의 차수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안 의결 권한을 기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p.62)

○ 동 사업은 지난 '24년 10월, 행정안전부의 '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통보받음에 따라 운영계획 등을 개선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2
사	무	관	리 비	202
◦ 운영계획 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 등				190
◦ 제안서 평가 참석 수당				2.8
◦ 자문회의 운영				8
◦ 회의 운영 소요경비				1.2

- 동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①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토대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②운영계획 차별화 방안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된 바,
- 영등포구청이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구립 영등포예술의전당”, 마포구청이 마포유수지에 건립 추진중인 “K-POP 복합공연장” 등과의 차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컨설팅 용역 등이 추진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2) 균형발전본부

□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115)

- 동 사업은 남산에 ①곤돌라를 도입하고 ②생태 및 경관을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고자 시설비 345억 6,100만원 등을 포함한 391억 6,2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9,162	
사	무	관	리	비	538
◦ 남산발전위원회 운영 및 자문과 자문비 등				15	
◦ 홍보 영상 및 콘텐츠 제작, 기록화사업 등				180	
◦ 브랜드 BI 공모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170	
◦ 남산 곤돌라 국유지 임차료 등				17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325	
◦ 남산곤돌라 인수단 운영 등				1,535	
◦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749	
◦ 언론 홍보				40	
시	설			비	34,561
◦ 생태환경 회복사업 등				2,095	
◦ 곤돌라 조성사업				32,466	
감	리			비	1,728
◦ 곤돌라 조성 감리 용역				1,728	
시	설	부	대	비	10
◦ 곤돌라 조성 시설부대비				10	

- 사업부서는 '25년 11월, 곤돌라 조성사업을 준공하고자 '25년도 예산에 잔여 공사비 342억 4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동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

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는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고, 서울수도 법원 결정에 항고하여 추후 공사 일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인지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사업별설명서 p.178)

- 동 사업은 휘경유수지 일대의 복합거점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의 2차분 소요예산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0
시	설	비		50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차분)				50

- 사업부서는 지난 '23년 11월, '24년도 본예산 제출시 동북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자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2억원을 편성요청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부서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 '24년 4월,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편성된 2억원을 재원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 관련 방침 수립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5년도 예산안에는 선금

(2억원)을 제외한 잔금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109〉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관련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 예산안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00	-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시설비)	-	50

※ 자료근거 : 균형발전본부,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87
균형발전본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78

○ 사업부서는 사업대상지(휘경유수지)가 동북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으나, 당초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나 의회의 예산심사시에는 “동북권 전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예산편성 필요성을 심의한 것인바,

- 사업부서도 휘경유수지 관련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다시 이행한 것은 동 사업이 기존 용역과 다른 용역임을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 사례는 의회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사료되어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업은 이미 '24년 4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지난 '24년 6월,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편의를 우선하여 기확보된 재원을 임의 활용한 사례로 검토됨

□ 서울창조타운(구, 혁신파크) 조성 (사업별설명서 p.208)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시설 철거에 필요한 소요예산 35억 3,500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을 포함

한 73억 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5년 8월까지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 처분하려는 토지의 면적(48,000 m^2)이 5,000 m^2 이상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1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305					
사	무	관	리	비	8				
◦ 자문수당					8				
공	공	운	영	비	64				
◦ 공유재산손해보험 공제회비					24				
◦ 교통유발금					4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178
◦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									3,178
시	설							비	510
◦ 감정평가수수료									500
◦ 측량수수료									1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3,535
◦ 철거비 및 부지정리비									3,535

- 서울시는 지난 10월, 관련 의안에 동 안건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평생교육국 소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만 삭제하여 수정가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관련 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계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2,498억 2,300만원)의 경우에는 65.2%, 1,631억 3,400만원이 동 시설의 매각수입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동 시설 매각 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되거나, 회계연도중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공유재산매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3) 정원도시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미이행한 사업

-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별설명서 p.73)
-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 (사업별설명서 p.256)
-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별설명서 p.312)

-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소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은 서남권역 내 유휴 공공부지를 발굴하여 생활권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기 위해 시설비(13억원)와 시설부대비(800만원)를 포함한 13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308
시	설	비		1,300
	◦ 관악구 남현동 512-2 일대			1,300
시	설	부	대 비	8
	◦ 공사 부대비비용			8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2025년도 추진일정”을 검토하면 '25년 2월부터 4월까지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용역비(7,000만원)에 대해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은 강북구 수유동 소재 구(舊)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에 정원문화힐링 복합시설, 매력가든 등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6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소요예산(6억 2,000만원) 중 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과 ②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4,000만원, ③ 재정타당성 조사 수수료 8,000만원이 포함된 것인 바,

〈표 2-11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20
시	설	비		620
	① 기본계획 용역비(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포함)			500
	②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40
	③ 재정타당성 조사 수수료			80

- ①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원)과 ②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4,000만원)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사료됨
- 정원도시국 조경과 소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6년도 중 개최될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7,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시설비(5,000만원)의 경우,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본구상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기술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사무관리비(2,000만원)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공모전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70
	사무관리비			20
	◦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			20
	시설비			50
	◦ 마스터플랜 용역비			50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비(5,000만원)를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이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해당 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임에도,

- 동 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한 바 없어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시키지 못한 편성 사례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450)
-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별설명서 p.471)

○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소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는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182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123
	◦ 보전지역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3
사 무 관 리 비				89
	◦ 보전지역 총괄 유지관리비			10
	◦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 위임 보전지역 유지관리			79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3
	◦ 생태경관보전지역 시책업무 추진			3
연 구 용 역 비				220
	◦ 정밀변화관찰 연구 (5,500만원 × 4개소)			22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38
	◦ 자치구 관리 보전지역 유지관리			538
시 설 비				208
	◦ 둔촌동, 봉산 등 정비사업			208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연구용역비(2억 2,000만원)의 경우, ①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②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③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④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를 포함한 4건의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① 관악산과 ② 둔촌동 그리고 ③ 한강밤섬에 대한 정밀변화관찰 연구는 각각 5,500만원을 투입하여 '25년 3월부터 '26년 4월까지 13개월 간 시행되는 학술용역으로서 용역비(5,5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 ④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의 경우에는 총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6개월 간 시행되는 학술용역이지만, 예산안에는 '25년 3월부터 '26년 4월까지 13개월 간 시행될 1차분에 대한 용역비(5,5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예산안을 통해 12개월 이상 시행될 학술용역의 용역비를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소관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는 행위 제한 단속·순찰, 생태계 정비 및 복원, 정밀변화관찰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억 6,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568
사	무 관 리 비			37
	◦ 보호구역 총괄 유지관리비			3
	◦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 위임 보호구역 유지관리			10
	◦ 조류 서식현황조사			24
연	구 용 역 비			55
	◦ 야생생물 보호구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5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425
	◦ 자치구 보호구역 관리비			425
시	설 비			50
	◦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보호종 서식지 생태복원사업			50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연구용역비(5,500만원)의 경우, 학술용역인 진관 야생생물 보호구역 정밀변화관찰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5,500만을 투입하여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나 예산안에는 용역비(5,5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에도,

- 동 사업은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고 실제 회계연도중 집행하지 못할 경비까지 편성요청 하고 있어 유사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674)

○ 동 사업은 공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문화공연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42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행사운영비(3억 1,000만원)의 경우, ① **계절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2억원)와 동일한 규모인 2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② **서울숲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표 2-11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213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2,103
◦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03
사 무 관 리 비				200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 교체				10
◦ 공원유지관리 및 운영물품				100
◦ 공원운영 및 지급수수료				31
◦ 공원 관리용 장비 및 차량 임차료				8
◦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및 가드너 양성프로그램 등 운영				50
공 공 운 영 비				365
◦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65
◦ 보험료 및 제세				45
◦ 시설장비유지비				74
◦ 차량유지비				12
◦ 노후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72
◦ 서울숲공원 유지관리용역(바닥분수 청소 등)				96
행 사 운 영 비				310
◦ 서울숲 계절별 행사				200
◦ <u>서울숲 20주년 기념행사</u>				110
재 료 비				123
◦ 수목, 잔디, 계절꽃모 구입 등				123
행 사 실 비 지 원 금				1
◦ 공원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워크숍				1
기 타 보 상 금				8
◦ 공원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워크숍				8
시 설 비				1,100
◦ 서울숲 노후시설 정비사업				500
◦ 서울숲 시설물, 녹지 유지관리(연간단가)				500
◦ 서울숲 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100

- 동 사업은 '25년도 중 신규 추진되는 행사인 **서울숲 20주년 기념행사**를 기존의 행사(**서울숲 계절별 행사**)와 함께 편성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24) 미래한강본부

□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별설명서 p.245)

- 동 사업은 '25년 12월, 한강공원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25.12.20~'25.12.31)하기 위해 4억 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계				405	
사	무	관	리	비	1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				1
행	사	운	영	비	403
	◦ 프로그램 운영 및 부스 제작 설치 등				403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 동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총사업비(4억 500만원)가 직전 투자심사(5억 5,000만원) 대비 감소되었으며, 지난 '23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안으로 확인됨
- 그러나 규칙 등은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위치를 일부 이동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다시 투자심사(재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기존의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한 장소는 광진구 자양동 소재

뚝섬한강공원이나, '24년도 행사의 개최장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한강공원으로 확인되어 '24년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심사(투자심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금년도의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어 재심사를 이행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24년도의 행사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예산안의 경우, '25년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예산(4억 500만원)을 편성요청 하는 것이나, '25년도 행사의 개최장소는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사 개최장소부터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 필요 시에는 투자심사(재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예산편성에 앞선 선행과정을 소홀히 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25) 자치경찰위원회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의 오펜성 사례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별설명서 p.38)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42)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장비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00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범죄예방 근절 등 캠페인 - 청소년대원 합동 방법 순찰 - 자율방범대 정복 지원				100
				59
				19
				20

- 행정안전부가 기존 개정을 통해 예산과목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301-06)** 내용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를 편성할 경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중 법령에 따른 **자율방범대 정복 지원**과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대원 합동 방법 순찰, 범죄예방 근절 등 캠페인** 등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명을 변경하였음에도 사업부서는 사업별설명서에 여전히 기존 조례를 사업근거

로 명시한 바,

-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가 사업별설명서를 전례답습적 행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로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중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에 자율방범대 근무복(하복) 구입 등(8억 6,1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2-11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053							
사	무	관	리	비	14						
◦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				14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자	율	방	범	대	실	비	지	원	126		
◦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				126							
-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워크숍 등				93							
- 자율방범대원 모집 홍보물				11							
- 자율방범대 간담회·워크숍 참석 대원 급량비 및 교통비 지원				22							
민	간	단	체	법	정	운	영	비	보	조	40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16							
◦ 초단시간 근로자 보험료				1							
◦ 차량 임차 및 유류비				4							
◦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임대차계약) 지원				1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61		
◦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				861							
- 자율방범대 근무복(하복) 구입				496							
- 자율방범대 근무복(방한복) 구입				365							

-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동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모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대해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는 포괄적인 규정도 있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방범 관련 경비를 경상이전(300)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306-06)**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본지출(400)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까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 · 신축** (사업별설명서 p.187)

- 동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사무실을 이전 및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23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소요예산 99억 2,600만원중 '25년도 소요예산 4억 3,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에는 “건물의 신축”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인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시설비(4억 2,700만원)는 관련 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시설비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의결('24.11.27)결과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표 2-12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37
사	무 관 리 비			10
	◦ 위원회 수당			10
시	설 비			427
	◦ 설계비			383
	- 설계비			349
	- 현상공모비			34
	◦ 지반조사비			44

- 아울러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공유 재산 항목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일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일을 기입하고 있는 바,
-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 안 심사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6) 서울아리수본부

□ 수도사업 대외협력 강화 (사업별설명서 p.61)

- 동 사업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사업, 상수도 전문 기술인력 해외 파견, 해외 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12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75
사	무	관	리 비	42
	◦ 해외교류용 자료 제작			7
	◦ 수도사업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운영			1
	◦ 해외 교류용 기념품 제작			15
	◦ 해외사업 우수사례 브로슈어 제작			9
	◦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운영			9
지	급	수	수 료	110
	◦ 해외교류 통·번역비			39
	◦ 국제물박람회 서울시 홍보관 운영			70
국	외	업	무 여 비	39
	◦ 상수도 기술 전문인력 해외 컨설팅 파견			12
	◦ 아시아상수도협의체(A1-HRD) 회의 파견			4
	◦ 국제물박람회 서울시 홍보관 운영			22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3
	◦ 시책업무 추진			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
	◦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운영			80

- 소요예산(2억 7,500만원)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24년도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예산과목 중 지급수수료와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여 서울아리수본부가 직접 추진하여 온 초청연수를 '25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해 신규 “위탁” 또는 “대행”시키고자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소요예산(8,000만원)의 경우, 예산안 제출('24.11. 1)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25년도 중 초청연수 운영을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시킬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 공기관에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별설명서에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기재된 자치법규의 조항이 사업운영을 서울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 공공위탁할 수 있지만,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불비되어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임에도 다른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 ②관련 조례에는 ‘신규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위탁사업비)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청연수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8,000만원)를 신규편성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어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바,

- 동 안건의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제외한 다른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조례안이 원안의 결될 경우에는 초청연수를 공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근거조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해당 안건은 예산안의 법정의결시한('24.12.16)을 경과한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어 안건의 의결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사업부서는 신규위탁을 위한 사전절차(시의회 동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을 위한 근거규정조차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자 공기관에 “위탁”이 아닌 “대행”을 추진하려던 것이라고 번복하고 있으나,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자인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초청연수 운영을 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다양한 법령과 자치법규에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대행”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8,000만원)는 ①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위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안이고, ② “위탁”을 위한 사전절차(시의회 동의)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③ “대행”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정수센터 시설 정비 (사업별설명서 p.214)

- 동 사업은 6개 정수센터와 4개 취수장의 노후 정수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해 607억 8,900만원(국비 4억 8,4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x484) 60,789
시	시설비			(x484) 59,675
	생산부			(x-) 16,162
	광암정수센터			(x-) 1,576
	구의정수센터			(x-) 3,606
	독도정수센터			(x-) 3,103 주1)
	영등포정수센터			(x-) 7,362
	암사정수센터			(x-) 14,806
	강북정수센터			(x484) 13,058
	합	리	비	(x-) 824
	생산부			(x-) 500
	구의정수센터			(x-) 45
	독도정수센터			(x-) 35
	영등포정수센터			(x-) 40
	암사정수센터			(x-) 150
	강북정수센터			(x-) 54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x-) 290
	광암정수센터			(x-) 13
	독도정수센터			(x-) 200
	영등포정수센터			(x-) 55
	암사정수센터			(x-) 22

※ 주1) 중앙제어실 백업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8,900만원)이 포함된 것임

○ 동 사업이 **뚝도정수센터**의 노후 정수시설을 개량·정비하고자 편성요청한 **시설비**(31억 300만원) 중에는 **중앙제어실 백업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8,9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버 교체와 스토리지 교체는 단순한 유지관리가 아닌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 동 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서 예산안 제출('24.11. 1)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자 지난 11월 20일에서야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시의회의 확인과정이 예산안의 편성·제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의 흠결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순기능은 있을 것이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서울시의 자치법규(규칙)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검토의견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출자금을 편성요청한 세부사업중 주택실 소관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은 예산안의 제출일('24.11. 1)까지 시의회로부터 출자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 출연금을 편성요청한 평생교육국 소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조례로 정한 예산안 제출일('24.11. 1)까지 시의회로부터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출자금과 출연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23〉 출자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자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실)	5,65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2296)	주택공간	'24.10.16	가결 '24.11.26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기후환경본부)	24,00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277)	환경 수자원	'24.10.16	가결 '24.11.22

〈표 2-124〉 출연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연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11,13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275)	행정자치	'24.10.16	- '24.11.2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재무국)	2,42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62)	〃	'24. 8.12	가결 '24.11.2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민생노동국)	14,02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60)	기획경제	'24. 8.12	- '24.11.28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경제실)	54,67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57)	〃	'24. 8.12	수정가결 '24.11.26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획조정실)	313,32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55)	〃	'24. 8.12	수정가결 '24.11.22
서울연구원 출연 (기획조정실)	30,64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53)	〃	'24. 8.12	수정가결 '24.11.22

□ 사전절차(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

- 서울시의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① 신규 위탁사무, ② 재위탁 사무, ③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산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25년도 예산안에는 20개 실·본부·국, 202개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2개 세부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로 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제출일('24.11. 1)까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다만, 개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32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25〉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 결과
행 정 국	연수원 운영 (사업별설명서 p.242)	3,275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74)	10.16	11.26	가결
문 화 본 부	서울책보고 운영 (사업별설명서 p.878)	1,047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05)	8.12	11.26	가결 (조건부)
“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사업별설명서 p.884)	1,655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06)	8.12	11.26	가결 (조건부)
시민건강국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별설명서 p.584)	179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3)	10.16	11.28	-
여성가족실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9)	1,304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0)	10.16	11.21	가결
		1,203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79)	10.16	11.21	가결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사업별설명서 p.214)	349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78)	10.16	11.21	가결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489)	668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1)	10.16	11.22	가결
“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742)	452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2)	10.16	11.22	부결
글 로 벌 도시정책관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	2,910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82)	8.12	11.21	가결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59)	291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83)	8.12	11.21	가결
“	서울시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66)	474	서울시 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84)	8.12	11.21	가결
“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23)	701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85)	8.12	11.21	가결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아울러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며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 바,

-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25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여성가족실 소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운영**(민간위탁금 6억 6,800만원)과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금 4억 5,200만원)의 경우, 신규 민간위탁 동의건에 해당되어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사업별설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5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설명서의 “사전 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시민건강국 소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의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기일('24.12.31) 도래에 따라 위탁기관 1개소를 신규 공개모집하는 것이기에 시의회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021년 9월 10일, 원안가결”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성가족실 소관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경우에

도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5년 5월부터 '28년 4월까지 재위탁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할 경우,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4월 26일, 동의”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성가족실 소관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7월 16일, 동의”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성가족실 소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9월 26일, 조건부적정”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성가족실 소관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9월 26일, 조건부적정”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 정확한 내용만 기재하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26〉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이행여부 부정확 기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의안명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이행여부 표기내용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3)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별설명서 p.584)	179	2021. 9.10 가결
여성가족실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79)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9)	1,203	2024. 4.26 가결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0)		1,304	2024. 4.26 가결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78)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사업별설명서 p.214)	349	2024. 7.16 가결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1)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489)	668	2024. 9.26 가결(조건부)
“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2)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742)	452	2024. 9.26 가결(조건부)

□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안 제출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명시하고 있음

-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수입과목 · 지출과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세출예산을 성질별 분류하여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부기)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출된 '25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중 세출예산에 세입과목인 임대 수입(임대료)을 세출과목인 임차료와 여전히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세출예산중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부기)에 수입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기재한 사업들이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다수 확인되는 바, 지출에 해당되는 적정 용어인 '임차료'로 변경하여 법정서류인 예산안과 법정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27〉 세출예산중 임대료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	사 업 명	통계목	24년도 산출기초(부기)		25년도 산출기초(부기)	
민생노동국	대부업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용역(임대료, 인건비, 홍보비 등)	17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용역(임대료, 인건비, 홍보비 등)	17
	농업인의 날 행사		-	-	○행사장 임대료	5
	농업전문인력 육성		○강당임대료 등	3	○강당임대료 등	3
디지털 도시국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국제부담금	○사무실 임대료	38	○사무실 임대료	34
미래청년 기획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청년센터 서초 임대료	80	-	-
경제실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핀테크랩 공간 임대료	6,370	○서울핀테크랩 공간 임대료	6,585
	서울국제금융 오피스 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1,993	○임대료 및 관리비	4,553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제2서울핀테크랩 임대료	1,083	○제2서울핀테크랩 임대료	1,184
	투자유치기반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	279	○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	251
	서울시제조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897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743
복지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사무관리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 임대료	585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 임대료	53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분관 임대료 및 관리비	325	○분관 임대료	231
	노숙인 의료지원	민간위탁금	○임대료	104	○임대료	107
기후환경 본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민간위탁금	○센터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441	-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무관리비	○부지사용 임대료	21	○부지사용 임대료	21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특화 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드림센터 임대료	177	-	-
주택실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토지 임대료 지원	713	○토지 임대료 지원	656
도시공간 본부	효율적인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4,683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4,679
관광체육국	여가스포츠 활성화	사무관리비	-	-	○러너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임대료	1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재구성

○ 둘째, 결산 현황 누락 등 사업별설명서 부실 작성 주의

- 서울시는 사업별설명서에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명시하도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복지실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등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임의로 누락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민간위탁금의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필요

-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경우,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부기)를 명시하여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유형을 시설형, 사무형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된 임차료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별설명서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28〉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사 업 명	예 산 (안)	산 출 근 거	비 고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 영보자애원 운영 = 4,877,529천원 - 인건비 = 4,434,372천원 - 운영비 = 421,107천원 - 사업비 = 22,050천원 ○ 여성보호센터 운영 = 2,771,792천원 - 인건비 = 2,594,173천원 - 운영비 = 164,429천원 - 사업비 = 13,190천원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 17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민간위탁금 = 1,763,835천원 - 인건비(15명) = 857,900천원 - 운영비 = 72,432천원 - 사업비 = 203,387천원 - 인권실태 상시모니터링사업 = 80,075천원 - 기타 사업비 = 123,312천원		복지실 사업별설명서 p. 245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민간위탁금 = 877,440천원 - 인건비 = 723,565천원 - 운영비 = 76,975천원 - 사업비 = 76,900천원		복지실 사업별설명서 p. 257
하이서울쇼룸 운영	○ 하이서울쇼룸 운영 = 1,291,820천원 - 인건비 = 613,639천원 - 운영비 = 156,000천원 - 사업비 = 326,889천원 - 일반관리비 등 = 195,292,000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31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제2서울핀테크랩 인건비 = 363,368천원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비 = 93,591천원 ○ 제2서울핀테크랩 사업비 = 381,170천원 ○ 이윤 등 = 41,871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322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 서울 AI 허브 민간위탁 운영 = 8,133,566천원 - 인건비 = 1,691,165천원 - 운영비 = 3,128,134천원 - 사업비 = 3,314,267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521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2관) 운영 = 1,350,012천원 - 인건비433,616,000원 = 433,616천원 - 운영비144,935,440원 = 144,936천원 - 사업비771,460,000원 = 771,460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85

※ 자료근거 : '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넷째, 출연금 산출 내역 구체적 기재 필요

-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이행한 후 소요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사업별설명서에 출연금 총액만을 작성한 바,
- 출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별 예산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어 출연금의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29〉 출연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안)산출근거	2025년도 예산(안)산출근거	비 고
120 다산콜재단 출연금	○ 120다산콜재단출연금 = 30,474,458천원	○ 120다산콜재단출연금 = 30,072,395천원	홍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 194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44,070,416천원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46,034,958천원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 1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 = 17,565,054천원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0,966,985천원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 8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73,353,520천원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73,834,393천원	복지실 사업별설명서 p. 140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17,458,952천원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17,209,141천원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 40

※ 자료근거 : '24년도, '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다섯째, 사업명 표기 구체적 기재 필요

- 행정안전부는 훈령을 통해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복지실의 세부사업인 **서울 안녕 적립금**, **관광체육국의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의 경우 세부사업명으로 사업내용을 추정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섯째, 예산안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 대한 현실화 필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의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투자심사, 학술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 이행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과 민간위탁 심의 절차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원화됨에도 사업별 설명서의 사전절차 이행 양식에는 각각의 절차 이행 여부가 아닌 한 종류의 절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때문에 사업 담당자가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잘못된 정보는 결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사업별설명서 양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30〉 사업별설명서 양식

현 행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재정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 재산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공 건축 사전 검토	사회 보장 제도 협약	중소 기업 지원	
☐	☐	☐	☐	☐	☐	☐	☐	☐	☐	☐	
↓											
개선의견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재정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 산관리 계획안	출자· 출연	민간 위탁 의회 동의	공공 건축 사전 검토	사회 보장 제도 협약	중소 기업 지원	
☐	☐	☐	☐	☐	☐	☐	☐	☐	☐	☐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재정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 재산 위원회 의회	출자·출 연	민간 위탁 위원회 의회	공공 건축 사전 검토	사회 보장 제도 협약	중소 기업 지원	
☐	☐	☐	☐	☐	☐ ☐	☐	☐ ☐	☐	☐	☐	

(4)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818억 4,700만원, ②지출 6,519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1,481억 5,200만원 ②지출 3,780억 1,3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1조 3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1〉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1,030,000	1,030,000
사 업 예 산		881,847	651,986
자 본 예 산		148,152	378,013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p.23 “2025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1조 300억원으로 '24년도 본예산(9,700억원)보다 6.2%, 600억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급배수공사수익**을 금년도 본예산(272억 9,800만원)보다 △19.0%, △51억 9,800만원 감액된 22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본예산(509억 300만원)보다 120.7%, 614억 3,600만원 증액된 1,12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수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2-132〉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1,030,000	970,000	60,000				6.2
	상수도사업수익	881,847	870,884	10,962				1.3
	영업수익	846,229	839,275	6,953				0.8
	상수도사용료수익	820,909	808,760	12,149				1.5
	급배수공사수익	22,099	27,298	△5,198				△19.0
	기타영업수익	3,219	3,217	2				0.1
	영업외수익	35,618	31,609	4,009				12.7
	이자수익	5,731	2,575	3,155				122.5
	타회계전입금수입	23,308	22,823	485				2.1
	기타영업외수익	6,578	6,210	368				5.9
	자본적수입	148,152	99,115	49,037				49.5
	유형자산처분	5,355	8,822	△3,466				△39.3
	재산매각수입	5,355	8,822	△3,466				△39.3
	자본잉여금수입	14,034	20,614	△6,580				△31.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4	1,956	△1,472				△75.3
	원인자부담금수입	13,550	18,658	△5,107				△27.4
	유보자금	128,762	69,677	59,084				84.8
	순세계잉여금	112,339	50,903	61,436				120.7
	미수금	16,422	18,774	△2,352				△12.5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p.31 “세입예산 목별구성”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1조 300억원으로 '24년도 (9,700억원)보다 6.2% 6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4년도(6.482억 4,900만원)보다 △0.7%, △42억 1,500만원 감액된 6,44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4년도(2,694억 9,100만원)보다 9.1%, 244억 9,600만원 증액된 2,93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69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3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 하였음

〈표 2-133〉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예산안)		2024(본예산)		증 감	
		%		%		%
계	1,030,000	100.0	970,000	100.0	60,000	6.2
상 수 도 사 업 비 용	651,986	63.3	656,007	67.6	7,355	1.1
영 업 비 용	644,033	62.5	648,249	66.8	△4,215	△0.7
영 업 외 비 용	967	0.1	968	0.1	△1	△0.1
예 비 비 (경 상 사 업)	6,985	0.7	6,790	0.7	195	2.9
자 본 적 지 출	378,013	36.7	313,992	32.4	32,645	10.4
유 형 자 산 취 득	293,988	28.5	269,491	27.8	24,496	9.1
무 형 자 산 및 기 타 유 동 자 산 취 득	4,560	0.4	1,473	0.2	3,087	209.6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5,480	4.4	25,288	2.6	20,191	79.8
기 타 자 본 적 지 출	30,984	3.0	14,828	1.5	16,155	108.9
예 비 비 (투 자 사 업)	3,000	0.3	2,910	0.3	90	3.1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재구성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411억 3,600만원, ②지출 5,239억 2,8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689억 7,500만원, ②지출 3,861억 8,3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9,101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4〉 2025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910,112	910,112
사	업 예 산	841,136	523,928
자	본 예 산	68,975	386,183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5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총규모는 9,101억 1,200만원으로 '24년도 예산액 8,518억 2,300만원보다 6.8%, 582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사용료수익**중 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 '24년도(4,082억 2,000만원)보다 676억 200만원 증가하여 총 사용료수익은 '24년도(6,895억 800만원)보다 9.7%, 669억 900만원이 증액된 7,564억 1,800만원을 편성한 것이 '25년도 수입예산이 증액편성된 주요 요인으로 사료됨. 아울러 '25년도 수입예산에는 '24년도에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135〉 2025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910,112	851,823	58,288	6.8
	사업수익	841,136	774,442	66,693	8.6
	영업수익	813,745	740,588	73,157	9.9
	사용료수익	756,418	689,508	66,909	9.7
	기타영업수익	57,327	51,079	6,247	12.2
	영업외수익	27,390	33,854	△6,463	△19.1
	이자수익	9,321	3,651	5,670	155.3
	타회계전입금수입	15,489	27,704	△12,214	△44.1
	기타영업외수익	2,580	2,498	81	3.2
	자본적수입	68,975	77,380	△8,405	△10.6
	투자자산처분	-	-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	-
	자본잉여금수입	52,218	55,878	△3,660	△6.5
	시설분담금수입	50,609	53,345	△2,736	△5.1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95	1,191	△996	△83.6
	공사부담금수입	1,414	1,341	72	5.4
	유보자금	16,757	21,502	△4,745	△22.1
	순세계잉여금	-	-	-	-
	미수금	16,757	21,502	△4,745	△22.1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p.17~18 “수입예산 총괄표” 재구성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25년도 지출은 9.10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8,518억 2,300만원)보다 58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사업예산**은 전년도(4,886억 1.400만원)보다 7.2%, 353억 1,400만원 증액된 5,239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전년도(3,632억 900만원)보다 △6.3%, △229억 7,400만원 감액된 3,861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36〉 2025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 감	
계	910,112	100.0	851,823	100.0	58,288	6.8
사업예산	523,928	57.6	488,614	57.4	35,314	7.2
하수시설관리	98,311	10.8	72,671	8.5	25,640	35.3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84,543	20.3	187,772	22.0	△3,229	0.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06,972	11.8	97,822	11.5	9,150	9.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5,150	8.3	71,668	8.4	3,481	4.9
행정운영경비 (물재생계획과)	6,931	0.8	6,817	0.8	113	1.7
행정운영경비 (물재생시설과)	75	0.0	72	0.0	2	2.8
행정운영경비 (중량물재생센터)	16,415	1.8	16,317	1.9	98	0.6
행정운영경비 (난지물재생센터)	12,527	1.4	12,897	1.5	△370	△2.9
재무활동	22,500	2.5	22,000	2.6	500	2.3
재무활동 (물재생시설과, 사업예산)	-	-	74	0.0	△74	순감
예비비(사업)	500	0.1	500	0.1	-	-
자본예산	386,183	42.4	363,209	42.6	△22,974	△6.3
하수시설관리(자본)	309,141	34.0	285,287	33.5	23,853	8.4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49,186	5.4	55,789	6.5	△6,603	△11.8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6,878	1.9	14,396	1.7	2,482	17.2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9,265	1.0	6,051	0.7	3,214	53.1
재무활동	225	0.0	100	0.0	125	125
재무활동 (물재생시설과)	1,341	0.1	1,450	0.2	△109	△7.5
예비비(자본)	147	0.0	135	0.0	12	8.9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서(안)」, 재구성